

스위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6
2. 주요 산업 동향 /7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0

III. 무역

-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3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7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0
대한수입규제동향 /22
관세제도 /24
주요인증제도 /27
지적재산권 /27
통관운송 /29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2
- 외국기업 투자동향 /36
- 우리기업 투자동향 /38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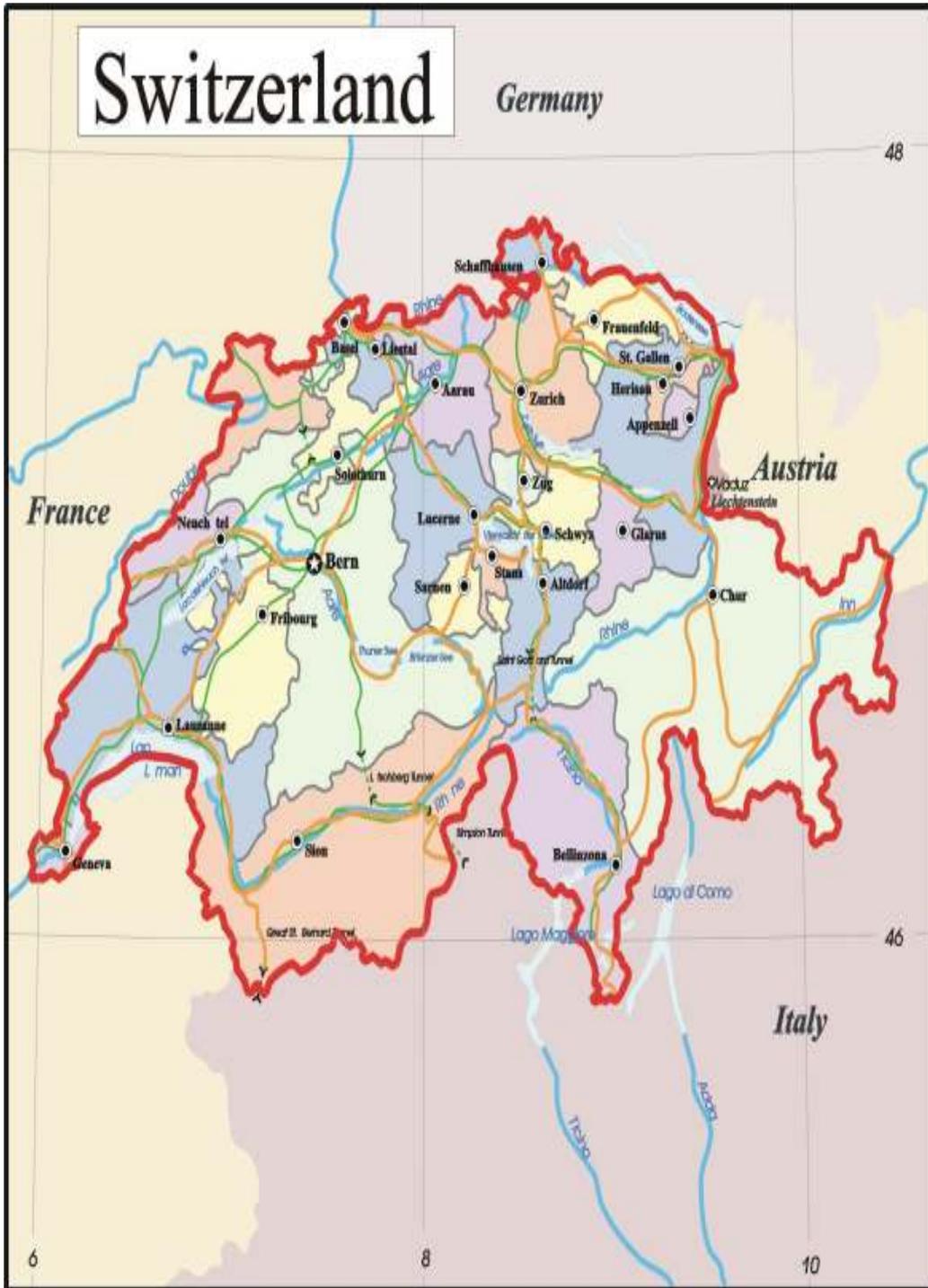
- 주요 투자법 내용 /39
- 진출형태별 절차 /43
- 투자입지여건 /48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50
- 조세제도 /5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7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59
2. 물가정보 /61
3. 바이어발굴 /63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65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68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9
7. 이주정착 가이드 /69
8. 출장가이드 /71



1992 MAGELLAN Geographics/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스위스 (The Swiss Confederation)
위 치	위도 북위 45-48도의 유럽대륙 중심부에 위치
면 적	41,285km ² (※ 한국: 99,394 km ²)
기 후	계절별 기온 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날씨
수 도	베른 (Bern)
인 구	750만 명
주요도시	취리히(109만 명), 제네바(49만 명), 바젤(46만 명),
민족(인종)	켈트족과 게르만족이 주류
언 어	독일어(64%), 불어(20%), 이태리어(7%), 레토로만어(1%)가 공용어
종 교	가톨릭(42%), 개신교(35%), 이슬람교(4%), 기타(3.2%)
건국(독립)일	1291년 8월 1일(3개 산악지역들이 최초로 스위스연맹동맹 결성)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Mr. Pascal Couchepin(임기 : 2008. 1. 1~ 2008. 12. 31)
입 법 부	양원제 (칸톤 대표회의 46명, 국민회의 200명)
정 당	사회민주당(SP, 50석), 급진민주당(FDP, 43석), 기독교민주당(CVP, 46석), 스위스국민당(SVP, 69석), 스위스녹색당(GPS, 22석), 녹색자유당(GLP, 4석), 기타(노동당 등, 12석)
정부성향	중립

자료원: 스위스 정부

나. 경제지표

GDP(명목)	3771억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2.7%
1인당 GDP	50,258 달러
실 업 률	3.3%
물가상승률	1.1%
화폐단위	스위스프랑 (CHF)
환 율	- 1US\$ = 1.2530CHF - 1EURO = 1.5481CHF
외환보유고	26,692억 달러(2005년 기준)
산업구조	농업(3.8%), 제조업(23.7%), 서비스산업(72.5%)
교역규모	- 수출: 1,422 억 달러(2006년), 1,260 억 달러(2005년) - 수입: 1,328 억 달러(2006년), 1,197 억 달러(2005년)
교 역 품	- 수출: 정밀기계, 화학의약품, 시계, 광학의료기기 - 수입: 자동차, 전기전자, 의류 등 소비재

다. 한-스위스 관계

체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보장협정('71.9) - 정기항공운항협정('76.11) - 공업소유권협정('77.12) - 사증면제협정('79.6) - 이중과세방지협정('81.4) -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90. 8) - 항공협정('95. 5) - 무역경제협정('99. 6) - 한-EFTA FTA 공식협상개시 서명('04. 12) - 한-EFTA 정식서명('05. 12 * '06.9 월 발효) - 한-유럽입자물리연구소간 협력협정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스위스 수출: 840 백만 달러(2006 년), 576 백만 달러(2005 년) - 대 스위스 수입: 1,319 백만 달러(2006 년), 1,168 백만 달러(2005 년)
교역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스위스 수출: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타이어 - 대 스위스 수입: 기계류, 화학의약품, 시계
투자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한투자: 225 백만 달러(2006 년), 40 백만 달러(2005 년), - 대 스위스투자: 5.72 백만 달러(2006 년), 2.43 백만 달러(2005 년)
교 민	2,296명(시민 및 영주권자 746명)

자료원: 스위스통계청, 스위스관세청, 스위스국립은행, 한국산업자원부, INVEST KOREA, 수출입은행, 주 스위스한국대사관

2. 정치 사회 동향

가. 2008년 스위스 대통령 선거

스위스연방의회는 2007.12.12 2008년 대통령으로 Pascal Couchepin 내무부장관을 선출했다. 임기는 2008.1.1~12.31까지 1년으로 제한한다.

나. EU-스위스 세법개혁 1차 협상 개시

EU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주(칸톤)정부가 스위스 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1972년 체결한 스위스-EU간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조세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제 개선을 요구하여 2007.11.12 베른(스위스) 및 브뤼셀에서 EU의 세금 분쟁 관련 첫 공식 협상이 시작됐다.

다. 외국인토지취득 제한, Lex Koller 유지

연방각의는 외국인토지취득 제한법인 Lex Koller의 폐지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하원은 과도한 주택 건설과 환경파괴를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법(Lex Koller)은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라. 유해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석유세 인상

2007.3.23 석유세 인상에 대한 법안이 스위스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투표 없이 2008.1.1부로 발효될 예정임. 법안 개정을 통해 스위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교통을 통해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라. 스위스 전기시장 50% 개방 및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보조

2008.1.1 새로운 전기보급법이 발효됨에 따라 연간 10만kWh 이상을 소요하는 기업 주는 전기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런 조치를 통해 스위스 전기시장은 약 50% 개방될 예정이며, 2008년 5월부터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는 재생에너지를 스위스연방 에너지청에 등록하면, 2009년부터 생산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마.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불법 노동에 대한 연방법안 마련 및 발효

불법노동 근절을 위해 스위스 정부는 2008.1.1 부로 불법 노동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 시행 및 고용주에게는 벌금부과를 비롯한 최대 5년까지 공공 조달 참여제한, 공공자금 지급의 중단 또는 감축, 스위스연방경제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법기업 리스트 등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효된다. 노동허가 미소지 외국인고용 적발 시 고용주는 최대 50만 프랑의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바. 스위스 방송시스템 DVB-T 결정

일반 TV 시장의 경우 유럽 내 대부분의 방송국이 EURO 2008 시즌을 겨냥해 2007년과 2008년에 DVB-T를 방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스위스 일부 주정부(칸톤)는 이미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으며, EURO 2008 개최 전에 전국적으로 시스템 도입 완료 예정이다

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2008.1.1부터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약관, 신청서, 계약조건 등에 개인정보 사용 용도 및 사용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아. 부가가치세율 단일화 추진

스위스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7.6%이나, 도서, 식료품, 신문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최저부가가치세율이 2.6%, 호텔 및 숙박업의 경우 3.6%가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와 스위스경제인연합은 스위스부가가치세율을 6%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경제인연합은 예외적용 없는 부가가치세율 단일화 추진으로 투자임지로의 스위스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숙박 및 소매업연합을 이원화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숙박 및 식료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용역 및 상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6%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인근 국가보다 약 15% 비싼 스위스 소비자가격은 현재도 스위스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식료품 등에 적용될 현재보다 높은 부가가치세율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 EURO 2008 개최

스위스는 오스트리아와 2008년 6.7~29일 까지 EURO 2008을 공동개최 할 예정이다. 스위스는 동 기간 동안 약 1~3백만 이상의 관람객이 스위스를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7만 객실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며 EURO 2008로 인한 추가 수입은 3억 스위스 프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를 공공장소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는 시설마련, 관람권과 교통티켓을 매치한 저렴한 교통상품개발과 특히 경기장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처리 방안 까지 치밀하게 행사준비에 임하고 있다.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용품인 접시와 컵으로 플라스틱제품의 사용이 금지되며, 사용한 용기는 반드시 구입처에 반납하여 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용기의 재질은 식물성으로 바이어 가스 또는 디젤 원료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스위스 관계

62년 12월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어 63년 3월에 우리나라의 상주공관이 베른에 설치 되었고,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64년 6월에 설치되었다.

스위스는 중립주의와 보편성 원칙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리 추구에서 경제, 기술협력, 교역대상으로 한국과의 교류에 비중을 두고 있다.

1953년 한국동란 휴전 이래, 중립국 감시위원단 (NNSC)에 대표를 파견,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74년 12월 북한을 정식 승인하였으나 경제관계를 제외 하고는 소원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북한이 스위스 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컨츄리 리스크 (Country risk)가 큰 북한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97년 12월부터 99년 8월까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한, 북한, 미국 및 중국이 참석한 4자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나. 한-스위스 EFTA 자유무역협정체결

2000년 7월 EFTA 는 한-EFTA 자유무역협정 추진의사를 피력한 이후 2004년 5월 이후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하였다. 2004년 8월 과 10월 제네바 및 서울에서 공동연구 회의 1,2차를 개최하였다. 한-EFTA FTA 추진에 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공청회의 2004.12월 제네바에서 양측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를 선언하여 1년 동안의 준비과정과 6개월의 협상을 통해 FTA 협정문안과 부속서 전체를 완전 타결하였다.

1) 상품분야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2006.9.1 발효함에 따라 모든 공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100% 폐지되었다. 스위스가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던 분야는 진주 및 귀금속류(71종), 의류와 그 부속품(62종),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 (61종), 가죽제품(42종) 등 인 바, 동 분야의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기본농산물에 관하여서는 한-스위스간 별도의 양자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 측은 한국 농산물 중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는바,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관하여는 쿼터 및 계절관세를 적용을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하였다.

2) 원산지규정

한-EFTA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한국은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당사국 내에서 완전 획득된 제품,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제품,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재료로 획득한 상품에 대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동 규정은 역외가공 조항을 두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역외가공제품에 대해 원산지로 인정 받을 수 있어,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3) 서비스무역

한-EFTA FTA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GATS 수준에 더하여 DDA 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하였다. 단 스위스가 타 유럽국가들과 시행중인 각종 협력사업, 즉 도로운송, 항공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금융 및 해운서비스의 부분개방 등 DDA 제2차 양허안(WTO 서비스 분류 기준상 총 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분야)에 3개 분야(빌딩청소업, 경영컨설팅, 전기용품 기술검사 및 분석서비스)를 추가로 양허했고 EFTA도 DDA 제2차 양허안 수준으로 양허했으며 우리나라의 요구에 따라 미용 및 세탁 서비스, 보안컨설팅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확대하였다.

4) 투자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 별도협정으로 체결했으며 한-싱가포르 FTA 및 한-일 투자협정 수준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였다. EFTA로부터의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토지 취득, 공기업, 농림축산업, 항공산업, 전력·가스·원자력산업, 금융서비스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보를 설정하였다. 종래 1971년 우리나라와 스위스간 체결된 개별 투자협정이 유일했으나 이번 동의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EFTA와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라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협정 체결 추진

외국기업이 스위스 내 전시회 참가 시 발생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환급해 주는 것이 국제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는 양국간 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한 환급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1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주고 있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간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협정을 체결이 추진 중이다.

자료원: 주 스위스한국대사관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08년 스위스 경제 동향

스위스 경제는 2004년부터 2007년 까지 평균 실질경제성장률 2.7%를 기록하여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 경제성장 하위 그룹을 탈퇴하고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2007년 잠정 집계된 스위스경제성장률은 2.8%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스위스의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EURO Zone 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2008년에도 2.2%의 경제성장을 기대함에 따라 스위스의 對유럽 수출은 2007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며, 미국의 부동산시장 하락으로 국제 신용경색 발생 우려 및 미국 건설경기의 위축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에 높아지고 있다.

유가상승으로 인해 미국시장에서는 석유 관련 제품의 수요 감소 및 경기 하강예상 돼 해외에너지 및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스위스는 원자재 및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고유가 지속시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실질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소비 촉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지속을 기대한다. 2008년 스위스 임금인상률은 평균 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물가인상률 1%로 반영 시 실질임금 인상률은 1.4%로 2001년 이후 최고치가 예상된다.

실질임금인상 기대와 가용 소득 증가로 의약품, 기호식품, 게임, 스포츠, 여가생활, 가전용품, 인테리어 제품 등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가 전망 된다.

전세계적으로 고가명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스위스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경기둔화조짐에 따라 상품 및 용역의 실질 수출은 2007년 대비 줄어 들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신규 일자리 2.1% 증가, 실업률 2.7%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일자리는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업률은 2.4%로 감소가 예상된다.

2008년 제조업분야 고용은 서비스분야 고용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업률은 평균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급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 대 프랑스 약세는 200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로 인한 수입제품의 가격 인상은 스위스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2008년 스위스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 본다.

자료원: BAK Basel Economics, Credits Suisse, state secretary for Economy (SECO)

나. 2007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지 표	2004	2005	2006	2007(예상)	2008(예상)
국내총생산	2.3	1.9	2.7	2.8	2.0
개인지출	1.5	1.3	1.9	2.2	1.9
정부지출	-0.8	-1.6	-0.6	1.4	1.4
투자	4.5	3.2	3.8	1.6	0.6
- 건설	3.9	3.5	0.1	0.6	-1.0
- 장비	4.9	2.9	6.9	6.5	3.7
수 출	8.4	6.2	10.1	5.8	4.5
수 입	7.4	5.3	9.8	6.1	4.9
실업률	3.9	3.8	3.3	2.8	2.6
인플레이션	0.8	1.2	1.1	0.5	1.1
3개월 LIBOR금리	0.48	0.81	1.56	2.44	2.75
10년 정부채권배당률	2.74	2.10	2.52	2.96	3.26
CHF/EUR	1.54	1.55	1.57	1.63	1.58
CHF/USD	1.24	1.24	1.25	1.23	1.22

자료원: BAK Basel Economics

2. 주요 산업 동향

가. 스위스 산업 개관

스위스의 산업별 GDP 비율을 살펴보면, 은행, 공공, 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69.4%, 에너지, 건설 등 제조업이 29.1%, 농업 등 1차 산업이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업 분야의 GDP 기여도가 대체로 높고, 1차 산업의 경우는 농업부문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체시장의 협소함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소비가전 완제품 제조산업은 거의 없으나 고가의 의료장비, 반도체 장비, 차량 제조에 들어가는 특수 전자부품 산업은 매우 강하다.

산업별 GDP 구성 비율 및 기여도

구 분	구성 비율(%)	기여도(%)
1차 산업	1.5	-4.6
Manufacturing	20.6	1.8
Energy, water	2.5	-1
Construction	6.1	2.8
2차 산업	29.1	1.7
Automotive sales and repairs, retail service	13.8	1.8
Tourism	2.6	-1.6
Transport, telecom	6.7	2.6
Banks	9.1	-3.2
Insurance	3.8	1.2
Financial services	1.7	12.3
Corporate services	11.5	1.7
Public administration	10.9	1.7
Education	0.6	0
Health and social services	6.1	2.7
Other services	2.5	2
3차 산업	69.4	1.2
합계	100	1.3

자료원: Credit Suisse Economic Research (CSER)

나. 산업별 성장률 및 GDP 내의 비중

산업별 고용, 가치창출, GDP내의 비중 현황 (2005년 기준)

분야	가치창출 (단위: 10억 CHF)	GDP 비중 (단위:%)	고용 (단위: 명)	1인당 생산성 (단위: CHF)
원료, 원자재	23.1	4.8	120,900	190,900
투자재	38.7	8.1	316,700	122,000
건설, 부동산	48.9	10.2	542,500	90,100
금융	68.3	14.3	190,700	358,300
운송, 도. 소매	65.5	13.7	691,200	94,700
소비재	17.4	3.6	129,500	134,200
건강 (의약, 병원 등)	38.4	8.0	519,800	73,800
여가활동	14.2	3.0	358,800	39,500
컨설팅, IT	43.4	9.1	383,000	113,300

자료원: UBS

다. 주요산업별 동향

1) 자동차 산업

2007년 3분기 신규등록차량(승용차)은 전년동기 대비 4.6%로 증가했으며, 9월 한달 동안 등록된 차량도 전년 동기대비 8.5%로 늘어났다. 금년 한해(1~9월) 동안 등록된 차량은 212,575 대로 신규등록차량 중 디젤모터 비중은 31.7%이며, 분진필터가 장착된 차량의 전체 등록차량의 8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판매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렴한 리스조건과 더불어 안정된 노동시장으로 소비자가 고가의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스위스 자동차수입협회 대변인에 따르면 2007년에도 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약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요인으로는 안정된 노동시장, 임금인상 및 등록된 차량 중 오래된 차량 비중이 높아 차량의 신규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없어 40개 사의 전문수입업체가 4500개의 브랜드를 수입하고 있다.

2) 의약품산업

스위스 1인당 의약품 구입비용 424 달러로, 미국 752달러, 프랑스 599달러, 이탈리아 520달러, 독일 429달러에 비교 시 의약품 구입비용이 낮은 편이며 의약품에 대한 지출이 전체 건강관련 비용 스위스는 약 10.1% 차지하여 OECD 평균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다.

현재 의약품 시장은 바이오 및 유전 공학 의약품 증가 및 중앙신경시스템관련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의약품, 성장가능성 커, 의약품 원료인 식물, 약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스위스 의약품시장 전체 매출은 CHF 42억 판매수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9%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네릭(복제의약품) 전문의약품시장이 46.4%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의 의약품분야의 예산절감을 위한 부담한 노력과 2005년 정부와 제약회사와 합의한 의약품가격인하가 2006년 이행된 결과이다.

2006년 스위스 제약회사는 두 자리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이유는 제조하는 제품의 단지 10% 만 스위스 내에서 판매되고 90%는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2006년 기준 스위스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성장하여, 스위스 전체수출품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25%를 넘어섰다.

3) 기계산업

스위스 기계산업은 판매기준으로는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산업에는 15700 기업이 포진돼 종업원은 112천명으로 연간 기계 및 운송차량은 400억 스위스 프랑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의 75%가 해외에서 발생된다.

스위스기계산업은 전세계적은 산업재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2007.1-9월 동안 수출은 575억 프랑으로 전년 동기대비 13.2%로 증가했다. 주요 10개 수출대상국 중 현저한 수출 증가를 보인 국가는 중국(+20.8%), 오스트리아(+20.3%), 이탈리아(+17.9%) 와 독일(+16.1%)이다. 동유럽으로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헝가리(+46.3%), 러시아(+41.5%), 폴란드(+31.4%)가 있다. 2007.1~9월 국내외 주문은 전년동기대비 25%, 매출은 16.2% 로 증가했으며, 지난 2년 동안 신규 일자리는 21,000개가 창출됐다.

4) 시계산업

2007.11월 스위스 시계수출은 전년 11월 대비 17.3%로 증가 했으며, 2007년 말 까지는 전년 대비 15.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캐럿 금과 스틸(steel)로 제조된 손목시계의 수출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손목시계의 평균수출 가격은 3000 스위스 프랑으로 금액기준으로는 7.2%, 수량으로는 9.9%로 증가했다. 스위스 시계의 주요 수입국가는 홍콩, 미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및 독일이며, 이중 홍콩과 미국은 전체 수출비중에서 각각 16.3%, 14.8%로 차지하고 있으며, 대 홍콩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1%로 증가했다.

중저가를 생산하고 있는 스위스시계제조업체는 최근 스위스시계협회가 “made Swiss” 표기 규정 강화(안)을 발표함에 따라 현재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숫자판, 케이스 및 기타 주요부품을 스위스 내에서 조달하거나 스위스 내에서 조립 및 품질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부품사용 비중이 최소 60%이상 규정에 부합하지 못해 스위스 원산지 표기를 포기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0% 자국 제품과 기술로 고가의 시계를 생산하는 대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 저가 시계생산업체는 가격경쟁력 또는 “Swiss made”라는 품질 보증 수표를 잃게 될 전망이다.

5) 화학산업

스위스 화학산업에서 특수화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약 3만개 이상의 특수 화학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스위스 대표산업 중 하나인 화학제품은 전체생산의 90%가 수출되고 있다. 2006년 화학산업 수출 또한 스위스 프랑 약세 지속과 세계 경기회복에 힘입어 현저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특히 화학비료의 수출은 약 23%, 페인트 8%, 기초화학은 19%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화학 수출 품목 중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 및 화학원료는 23% 금액기준으로 증가했다. 2007년 스위스 화학기업은 생산성 증가를 위해 신규 투자를 증가하여 신규 고용을 늘릴 예정이다. 업계종사자들은 2007년은 2006년 같은 장밋빛 전망을 아니지만, 꾸준한 생산, 수출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한다.

6) 소매업

2007년 3분기 스위스소매업은 전년동기대비 3.3%로 증가했다. 현저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Frisch-convenience products, 실내 인테리어와 엔터테인먼트 기기이다. 샐러드, 샌드위치, 조제요리 등의 판매가 증가된 반면, 냉동피자의 판매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유제품의 매출은 관세면제 등의 원인으로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1% 성장했다. 세계적으로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독일에서는 유제품가격이 최대 30%까지 인상했으나, 아직까지 스위스시장에서는 가격인상의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이어나, 늦어도 2008년에는 수요증가현상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음료수시장은 207.1~9월 동안 약3%로 성장했으며, 알코올함유 음료수는 4%, 알코올 미함유 음료수는 2% 성장했다. 생과일 및 야채 주스, 스포츠음료수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수시장은 판매수량은 증가한 반면, 심화된 가격경쟁으로 매출은 마이너스 성장했다.

평면 TV, MP3 Player, 비디오게임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Non-Food Market은 2007.1~9월 기간 동안 6%로 증가했다. 또한 Laptop의 판매도 19%로 증가했다.

시계, 액세서리, 의복, 장난감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스키, 스노우 보드 등 스포츠 용품에 대한 판매는 마이너스이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범 유럽 자유무역협정

1)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7개국의 합의로 1960년 1월 4일 스톡홀름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의 결성을 합의하고, 1960년 5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핀란드는 1961.3.27 가입에 서명하였으나, 1986년 정식 가맹국이 되었으며, 아이슬란드가 1970년 회원 가입하였다.

그러나 영국, 덴마크(1972), 포르투갈(1985), 핀란드, 스웨덴 및 오스트리아(1994)는 유럽연합(European Community)에 가입하기 위해 유럽 자유무역연합 에서 각각 탈퇴하였다. 스위스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자유무역 연합의 준가맹국이었으나, 1991년 이후 정식으로 가맹국이 되었다. 현재 EFTA의 가맹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이다.

2) EFTA와 EEC(현EU) 자유무역협정체결

1972 영국과 덴마크가 EFTA에서 탈퇴하며 EEC에 가입하고, 1972년 7월 22일 EFTA와 EEC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추가협의를 통해 EEC와 스위스 간의 협정이 리히텐슈타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되었다.

3)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결성

EFTA와 EU간의 합의에 따라 1992년 5월 1일 합의되고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EA 결성이 EFTA-EEC 자유무역협정을 대신하게 되었다. EEA의 결성 목적은 EFTA 가입국가들이 EU에 가입하지 않고도 EU 단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EEA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스위스-EU 양자협정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현재 EEA 가입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EFTA 국가들과 27개 EU 가입국가들이다.

4) EFTA- 중, 동 유럽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1993년 5월 1일 루마니아, 1993년 7월 1일 불가리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과거 동유럽 경제블럭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체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EFTA 국가들은 즉시 관세를 철폐한데 비해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수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비대칭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5) EFTA- 터키 자유무역협정체결

다자간 협정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992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6) EEC -중, 동 유럽 협약체결

1992년 EEC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간 자유무역 및 원산지 문제를 주된 이슈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7) EC-터키 관세동맹

1996년 1월 1일부터 공산품에 한하여 관세동맹이 발효되었다. 석탄과 철강을 위한 유럽 공동체의 제품들은 자유무역협정으로 교역되고 있으므로 제외되었다.

8) 중,동 유럽-터키 협약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터키간에 협약을 통해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주변 국가들과 원산지 증명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실현하고 있다.

나. 스위스와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양자간 농산물 협정

1)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팔레스타인(PLO), 싱가포르, 대한민국, 서아프리카 관세동맹, 튀니지, 터키, 파로스 제도

2)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이집트, 캐나다, 태국

3)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국가

인도네시아

4) 경제협력조약 체결 국가 (Declarations on Cooperation)

알바니아, 알제리, 걸프협력회의(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 정회원, 칠레 볼리비아가 준회원임), 세르비아 몬테그로, 우크라이나

5) 스위스와 양자간 농산물 협정이 체결된 국가

불가리아, 칠레, 이스라엘, 요르단, 크로아티아, 모로코, 마케도니아, 멕시코, PLO,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지니, 터키, EU 국가들

다. Pan Europe Mediterian 자유무역

1995 년 바로셀로나에서 EU-지중해 국가들은 유럽-지중해 자유무역지역(Euro-Mediterranean Free-Trade Area, EMFTA)를 2010 년까지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004 년 시리아와의 협상이 종결됨에 따라 EMFTA 의 밑그림은 완성이 된 상태이다.

EMFTA 는 유럽-지중해연합조약 (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s)를 통해 EU 와 지중해 국가간 그리고 지중해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성취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키는 1995 년 EU 와 관세동맹을 맺으면서 연합조약에 사인했다. 향후 이 연합체는 EFTA 국가를 포함하여 40 여 개 국가 6-8 억 명의 소비자를 갖는 세계 최대 교역단위가 될 것이다.

터키(1995), 튀니지(1995), 이스라엘(1995), 모로코(1996), 요르단(1997), 이집트(2001), 알제리(2002), 레바논(2002), 시리아(2004)가 가입을 완료했으며, 이들 국가 중 터키(1995), 튀니지(1998), 모로코(2000), 이스라엘(2000), 요르단(2002), 이집트(2004)는 비준을 거쳐 조약이 발효된 상태이다.

팔레스타인기구(PLO)는 1997 년 잠정 가입하였다. 리비아(1999) 옵저버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는 협상이 끝나 각료회의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 참고사항 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현황

유럽	현황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Convention	1960.5.3 발효
유럽연합(European Union)	1973.1.1 발효
피로야르(foroyar Islands)	1995.3.1 발효
마케도니아	2002.5.1 발효
크로아티아	2005.9.1 발효
지중해	현황
터키	1992.4.1 발효
이스라엘	1993.7.1 발효
팔레스타인	1999.7.1 발효
모로코	1999.12.1 발효
요르단	2002.9.1 발효
튀니지공화국	2005.6.1 적용, 2006.6.1 발효
레바논	2007.1.1 발효
이집트	2007.8.1 발효
알제리	협상 준비 중
기타	현황
멕시코	2001.7.1 발효
싱가포르	2003.1.1 발효
칠레	2004.12.1 발효
한국	2006.9.1 발효
SACU (South Africa Custom Union)	2006.7.1 협상체결
인도	협상준비
인도네시아	협상준비
일본	2007.3.9 협상 개시, 2008년 체결목표
캐나다	2007.6.7 협상타결, 체결예정
콜롬비아	협상준비
중동국가	협상 중
페루	협상준비
태국	협상 중
미국	스위스-미국 투자 및 무역 협력

자료원: 스위스연방관세청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스위스 무역 수치

2004년부터 스위스는 해마다 수출실적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스위스 수출입 호조 요인으로는 스위스 전체 교역규모의 60%이상을 차지하는 EU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유로화 대비 프랑화의 약세 지속에 따른 스위스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시장 및 물가 안정으로 개인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및 설비투자 증가와 건설경기 호조를 꼽을 수 있다. 2006년 연간 수입은 1,655억 프랑, 수출은 1,7229억 프랑으로서 전년 대비 각각 11%, 12.9%의 증가를 시현하였으며, 2007년 3분기 수출입은 전년과 같은 두 자릿수의 성장세 유지하였으며 2007년 3분기 수입은 1,355억 프랑, 수출은 1,460억 프랑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12.4%의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105억 프랑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0%로 증가했다.

스위스 무역수지 현황

(단위: CHF억)

연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무역수지
2003	1,354	-0.2	1,286	0.3	68
2004	1,463	8.0	1,370	6.5	93
2005	1,569	7.3	1,491	8.8	78
2006	1,772	12.9	1,655	11.0	117
2006(1-9월)	1,299	-	1,211	-	88
2007(1-9월)	1,460	12.4	1,355	11.9	105

자료원: 스위스관세청

나. 스위스 국가별수출입

1) 수출

스위스 2007년 3분기 말 수출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두 자리의 높은 성장을 시현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인도, 동유럽에 대한 수출이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2007년3분기말 기준 스위스 권역별 수출비중을 보면 유럽연합이 전체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63%가 넘으며, 유럽 외 산업국가인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를 묶은 권역이 15%를 차지 하여 유럽 및 유럽 외 선진 산업국가의 수출 비중이 79% 정도이다.

스위스의 최대 수출국가는 독일로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21%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로 전체 스위스 수출 비중에 각각 10.3%, 8.6%, 8.9% 차지하고 있다. 대 유럽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1%로 증가했다.

대 브라질 화학 완제품 및 반제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40%로 이상 증가하였으며, 체코,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리스, 중국, 인도, 호수 및 폴란드로의 수출은 25%로 증가했다.

스위스 주요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CHF백만)

순위	국명	2003	2004	2005	2006	2007.1-9월
1	독일	28,059	29,759	30,222	35,737	30,538
2	미국	14,885	15,316	16,139	18,205	13,760
3	프랑스	11,665	12,825	12,815	15,214	12,177
4	이탈리아	11,065	12,254	12,338	15,773	13,09
5	영국	6,567	7,505	7,704	8,337	7,059
6	스페인	4,715	5,923	6,486	6,880	5,701
7	일본	5,398	5,717	5,694	6,361	4,635
8	네덜란드	4,377	4,390	5,428	6,028	4,539
9	오스트리아	4,426	4,774	5,023	5,831	4,615
10	중국	2,460	2,828	3,222	3,739	3,336
	수출총계	130,661	141,734	151,455	177,194	146,003

자료원: 스위스관세청

2) 수입

스위스의 유럽 연합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아 2007 3분기 수입 실적을 보면, 전체 수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이다.

2007년 3분기 EU로부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로 증가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국가의 교역비중은 미미하나 수입은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로부터 수입은 각각 34.6%, 56.1%, 22.2% 및 25.9%로 증가했다.

OPEC국가로부터 수입은 스위스 에너지 수입감소에 따른 33.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은 82.2%로 증가했다.

스위스 주요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CHF백만)

순위	국명	2003	2004	2005	2006	2007.1-9
1	독일	41,566	45,484	47,605	55,179	46,023
2	이탈리아	13,226	15,616	16,079	18,498	15,117
3	프랑스	13,387	13,711	13,497	16,972	12,920
4	네덜란드	6,015	6,906	7,445	8,261	6,523
5	오스트리아	5,419	5,930	6,608	7,572	5,973
6	미국	6,518	6,583	6,519	8,318	7,335
7	영국	5,223	5,549	6,080	6,028	5,453
8	아일랜드	4,787	4,691	5,560	4,613	4,067
9	벨기에	3,873	4,170	4,258	5,094	3,927
10	스페인	2,751	3,401	3,913	4,039	3,109
	총 계	123,777	132,423	143,159	165,540	135,511

자료원: 스위스관세청

3) 스위스 품목별 수출입

□ 수출 품목

2007년 3분기 기준 모든 산업분야에서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산업은 식품분야로 전년동기대비 22.9%의 높은 성장을 시현했으며, 특히 음료수는 35.3%로 증가했으며, 쇠, 철의 가격인상으로 수출가격도 증가하여 금속분야 18.2% 성장했으며, 시계 및 합성수지분야도 1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스위스 수출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산업은 화학과 기계 및 전기전자로 전체 수출비중에 각각 35.8%,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분야 수출 또한 지속적인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 및 전기전자분야에서는 발전기의 수출은 34.9%로 증가하였으나 전기모터는 26.4%로 감소하였으며, 유기화합물은 27.8%로 증가하였다.

스위스 2007년 3분기 수출품목군별 수출 현황

(단위: CHF 백만, %)

구분	2007.1-9 (수출)			주요 품목 수출 증감
	금액	비중	증감	
식료품	4,337.3	3.0	22.9	음료수 43.1% ↑
금속	11,621.2	8.0	18.2	쇠, 철 27.8% ↑
시계(보석포함)	14,467.5	9.9	15.0	시계 16.9% ↑, 보석 13.1% ↑
합성수지	3,220.5	2.2	13.6	합성수지 13.6% ↑
기계 및 전기전자	31,434.3	21.5	12.2	발전기 34.9% ↑, 전기모터 26.4% ↓
화학	52,318.0	35.8	11.4	유기화합물 27.8% ↑
의류	1,669.8	1.1	4.1	의류 4.6% ↑
정밀기계	10,283.8	7.0	8.1	정밀기계 8.1% ↑
섬유	1,653.9	1.1	6.9	직물 8.9% ↑
제지 및 그래픽	2,672.5	1.8	3.6	제지 및 그래픽 3.6% ↑
합계	146,003.8	100		-

자료원: 스위스관세청

주: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임

스위스 주요 수출 품목

(단위: CHF백만, %)

순위	품 목	2005	2006	2007.1-9월	증감
1	의약품(비타민, 진단시약)	39,780	46,624	38,866.4	11.4
2	시계	12,323	13,737	11,045.4	16.9
3	정밀기계	11,427	12,876	10,283.8	8.1
4	금속제품	8,464	9,450	8,027.2	16.0
5	전자제품	6,956	8,003	6,644.0	13.2
6	화학원료	4,471	5,395	4,204.1	13.0
7	금속가공기계	3,874	4,354	3,440	11.3
8	보석	3,083	4,172	3,422.1	16.9
9	합성수지	3,401	3,799	3,220.5	13.6
10	제지	3,388	3,513	2,672.5	3.6
총계	수출총계	156,948.5	177,194.9	146,003.8	12.4

자료원: 스위스관세청

주: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임.

□ 수입품목

2007년 3분기(누계) 수입증가는 원자재, 반제품 및 자본재가 주도했다. 원자재, 반제품은 전체수입에서 28.5%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7%로 상승하였으며, 소비재(수입비중 39.0%) 및 자본재(25.7%)의 수입은 각각 10.6%, 12.5%로 증가한 반면 에너지(수입비중 6.8%)는 난방용 원료의 수요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3.3%로 하락했다. 가장 높은 수입증가율을 시현한 품목은 화학 및 금속반제품으로 각각 30%, 29.1%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소비재인 승용차, 식료품, 인테리어제품 모두 10% 이상 성장했다.

스위스 주요 수입 품목

(단위: CHF백만, %)

순위	품 목	2005	2006	2007.1-9월	증감
1	의료용품(위생용품포함)	19,335	21,733	17,960	13.1
2	화학반제품	11,65	12,330	11,482	30.0
3	측정, 공구, 검사 기계	8,872	10,185	8,598.3	14.6
4	금속반제품	7,425	9,801	9,141	29.1
5	승용차	7,778	8,006	6,635	13.0
6	의복 및 신발	6,627	6,864	5,685	6.0
7	식료품	5,027	5,419	4,346	8.5
8	제조기계	4,045	4,644	3,906	18.4
9	인테리어제품	3,445	3,878	3,194	14.4
10	전기 및 전자반제품	3,347	3,826	3,238.6	14.5
총계	수출총계	149,108	165,510.1	135,511.5	100

자료원: 스위스관세청

주: 증감은 전년 동기대비임.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과의 무역

1) 한-스위스 수출입 현황

한국과 스위스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배경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교역 규모가 늘어나 '93년의 경우 8억 1천만 불에 불과하였던 양국간 교역 액은 '03년의 경우 18억 불을 초과 하기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확대 추세에 있다. 2006년 한국-스위스 간의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24%로 증가 하였으며, 무역수지적자는 2002년 이후 가장 적은 폭을 기록하였다. 2007년 한국-스위스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수출 부진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스위스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불)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1	432	850	△418
2002	449	1,001	△553
2003	433	1,442	△1,009
2004	514	1,211	△697
2005	576	1,168	△592
2006	840	1,319	△479
2006.1-9월	703	938	△235
2007.1-9월	336	1,457	△1,12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 주요 수출입품목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스위스는 시계 등 정밀기계, 의약 및 화학산업이 고도로 발달 되어 있어 경쟁관계에 있다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의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의 대 스위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를 비롯하여 핸드폰, TV, DVD Player 등의 가전제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타이어, 그리고 일반소비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는 산업구조상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만 국내생산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스위스 시장 진출여건은 밝은 편이다. 특히, 스위스 시장은 저가품이 통하지 않는 품질 위주의 중, 고가품 시장으로서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구매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케팅 전략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스위스로부터 주로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중 상당수를 스위스제가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 정밀기계는 정확도 등에서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2007.3분기 말 한국-스위스 수출입통계를 보면 한국의 대 스위스 수출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최다 품목인 자동차는 외국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디자인 열세 등으로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자동차제조기업의 해외 생산거점이전으로 한국의 대 스위스 수출실적은 줄어든 실정이며, 2008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전화기는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수출누계 기준 0.9%로 감소했다.

수입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과 백금, 반도체 및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스위스 주요 수출입 품목 (2007.1-9기준)

(단위: 천 불, %)

수입				수출			
순위	품목	금액	증감	순위	품목	금액	증감
1	금	319,573	1,396.7	1	승용차	113,000	-33.3
2	의약품	159,907	18.2	2	무선전화기	45,511	-0.9
3	시계	75,704	33.6	3	제트유 및 등유	23,228	-
4	금속절삭가공기계	56,406	-19.0	4	그림	21,953	-62.6
5	백금	51,164	60,979	5	보조기억장치	15,620	38.7
6	원동기	45,508	22.2	6	타이어	12,887	-3.8
7	기타정밀화학원료	37,123	1.3	7	기타정밀화학원료	5,755	40.1
8	동광	34,935	160.1	8	안료	6,534	77.6
9	펌프	33,874	0.0	9	조각품	4,743	754.9
10	의료용기기	31,109	14.2		인쇄회로	3,740	32.3
11	집적회로반도체	27,637	137.5		시계부품	3,082	26.1
12	그림	21,385	2,467.6	10	의약품	2,879	17.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 MTI 4단위 기준,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

다. 한-EFTA FTA 체결과 발효1년(2006.9-2007.8) 이후의 수출입 추이

스위스는 한국을 경제기술협력 및 교역대상국으로서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한-EFTA FTA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고 11월 제네바에서 양측 수석대표 간 문안확인 및 가 서명이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정식서명이 이루어져 2006년 9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었다.

발효 1년 이후 과 발효 전 1년의 수출입 차이를 보면, 수출용 원자재, 의약품, 금, 시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줄었다. .

한-스위스 FTA 체결 전, 후 수출입 비교

(단위: 천 불, %)

구분	발효 전(05.9-06.8)	발효 후(06.9-07.8)	증감
수입	1,214,977	1,791,145	47.2
수출	817,609	534,983	▼34.6
교역액	2,032,586	2,326,128	14.4
무역수지	- 397,368	- 1,256,162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 보조기억장치, 인쇄회로 등의 수출이 상당 폭 증가하였으며, FTA로 24.2-2.9%의 비교적 높은 관세가 철폐된 전동축, 편직물, 기타 섬유제품 등의 수출은 아직 미미하지만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 스위스 주요 수출품목 동향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발효전(05.9-06.8)	발효후(06.9-07.8)	증감
1	7411	승용차	197,925	211,097	6.7
2	8121	무선전화기	82,591	64,623	▼21.8
3	1333	제트유 및 등유	-	23,056	100.0
4	9210	그림	58,671	21,985	▼62.5
5	8132	보조기억장치	13,639	22,205	62.8
6	3203	타이어	18,116	14,774	▼18.4
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858	7,612	56.7
8	2212	안료	3,902	7,275	86.4
9	9220	조각품	593	4,766	703.7
10	8343	인쇄회로	3,268	4,929	39.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 품목코드는 MTI4단위임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은 금, 의약품 및 시계 등의 품목이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금, 시세 상승 및 반도체 단다 제조용으로 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對 스위스 주요 수입품목 동향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발효전(1년)	발효후(1년)	증감
1	1111	금	18,656	304,550	1,532
2	2262	의약품	155,832	193,144	23.9
3	7311	시계	72,268	101,039	39.8
4	7231	금속절삭가공기계	85,860	90,144	5.0
5	1113	백금	112	46,011	40,981
6	7111	원동기	36,428	68,175	87.1
7	1130	동광	-	34,935	100.0
8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8,400	56,472	16.7
9	7112	펄프	47,359	42,316	-10.6
10	7331	의료용기기	35,047	42,015	19.9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 품목코드는 MTI4단위임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스위스는 WTO 발족에 따라 그간 지속해왔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을 더욱 완화하였으며 종전까지 온대지역산 식품류와 농산물에 대해 실시해 왔던 매우 까다로운 3단계 수입 허가제도 (three phase system)를 95년 WTO 농산물 및 수입협정에 따라 관세화 (Tariffication)하면서 종전 수입이 제한 되어 왔던 육류, 사과, 배, 채소, 포도주 등 총 28개 품목을 관세 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스위스의 수입허가제도는 비자동 허가(Non-automatic licensing)와 자동허가 (Automatic licensing)로 구분되는데, 농산물 중 Tariff Quota 대상인 28개 품목(HS 8단위 기준으로는 233개)이 비 자동 허가 대상이다

공산품의 경우 수입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안전(방사선물질, 무기, 폭약), 필수비축물자(비료, 향생제, 유류, 비누), 보건위생(방사선물질, 마약), 환경보호 (유해폐기물, 야생동물), 칸톤의 독점물품(소금), 포장규제(PVC병), 식품위생(채소류), 독극물, 동식물 위생 관련 품목 등이 해당된다. 일부 필수품(곡식류 및 식품류, 산업원자재, 연료 또는 탄화수소 등) 수입상은 비상시의 용도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 비축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축을 위하여 비용이 추가 되는 경우 수입상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 수입의 15 - 19% 정도가 수량규제, 수입제한 등 수입규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을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은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부가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버터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나. 수입쿼터

1995년 UR협정 이행을 위해 스위스는 종전의 쿼터제를 관세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다. 농산품 중 2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할당제는 야채 및 과일 등 대부분의 경우 계절별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할당 방식은 국산품구입조건 할당, 경매, 선착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점차 선착순 원칙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1) 기술규정 인증

스위스는 EU를 포함한 전 유럽경제지역(EEA) 가입국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마크 (CE)나 일본 산업표준(JIS), 한국표준(☉)과 같이 전 품목에 걸친 규격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른 임의 또는 의무적 테스트와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제반 기술규격에 있어서 EU 규격과의 일치율 추진함으로써, 현재까지 스위스 전체 기술규격의 90% 이상이 EU 규격과 일치되는 평가 되고 있다. 특히 EU의 유럽공동체 (CE)마킹관련 지침중 완구의 안전성, 가스기기, 기계류, 개인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6개 지침에 있어서는 스위스가 완전히 동일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2002년 6월부터 발효된 스위스와 EU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는 기술표준 규정이 상호 인정되는 분야에서 자국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인증절차가 완료 되도록 하였다.

우리의 수출관심품목인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스위스 전자전기 기술협회(SEV)에서 운영하는 스위스 전자전기기술협회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 SEV는 가장 광범위한 품목그룹에 적용되고 있으며, 규격은 유럽공동체 마킹제도의 규격과 매우 유사하다.

이 SEV 규격 이외에도 식품, 자동차,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등에도 엄격한 기술규격을 적용 하고 있으며, 자동차에 대해서는 1995년에 EU의 기술 표준을 모델로 하여 표준을 채택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관리국(IKS)의 검사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2) 위생관련 검사제도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 연구소가 검사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 검사를 받는다.

3) 상품라벨링

유전자변형상품(GMO)에 대해서는 1996.10월부터 유전자공학생산 농산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규칙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료원: 주스위스한국대사관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한-스위스 FTA에 체결에 따른 관세 장벽

2006.9.1 발효된 한-스위스 FTA는 총 1만114개 품목(기본농산물 제외) 중 1만19개 (99.1%)품목을 양허하고 EFTA는 1만114개 전 품목을 양허했으며, 가공농산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완전 철폐했다. 스위스는 기본 농산물에 대해 51% 양허했다.

주요 양허 내용

구 분	우리나라의 EFTA에 대한 양허	EFTA의 우리나라에 대한 양허	
F T A 비 협 정	전체	○ 양허율:99.1%, 즉시철폐:86.3%	○ 양허율:100%
	공산품	○ 양허율:100%, 즉시철폐:91.1% ○ 섬유판 등 목재, 보일러, 유기·무기화학제품,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7년 관세철폐 ○ 원유 및 석유제품 29개 품목 3년 재검토	○ 양허율:100%, 즉시철폐:100%
	수산물	○ 양허율:88.4%, 즉시철폐:27.1% ○ 민감품목은 쿼터설정(냉동고등어) 또는 양허제외(김,미역 등 해조류) ○ 주요품목 5년 내지 10년 관세철폐 ○ 넙치 등 활어류 및 민어(냉동), 홍어(냉동) 등 32개 품목 7년 재검토	
	가공농산물	○ 양허율:84.2%, 즉시철폐:15.8% ○ 인삼제품 등 민감품목 제외 ○ 주류, 커피 등은 10년 관세철폐 ○ 빵,과자,초코렛,껌 등 가공식품류는 40-50% 관세인하	○ 양허율:100%, 즉시철폐:35~55% ○ 라면의 경우 스위스는 50%, 노르웨이는 80% 정도 관세 감축 효과
3개 농 업 협 정	기본 농 산 물	○ 양허율:스위스 20.9%, 노르웨이 35.8%, 아이슬란드 50.8% ○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 민감품목 대부분 양허 제외 ○ 치즈, 포도주, 양고기 등 일부 품목은 점진적으로 관세철폐	○ 양허율:스위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 ○ 김치, 소주, 쌀발효주, 사과, 배 등을 양허

자료원: 외교통상부

수산물은 전체 407개 품목 중 김, 미역 등 해조류 47개 품목을 제외한 359개 품목을 양허하고, 주요 품목은 5년 또는 10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했다. 냉동고등어의 경우 연간 500톤에 대해서만 관세를 양허하는 관세할당쿼터(TRQ)를 적용했고 넙치 등 활어류 및 민어(냉동), 홍어(냉동) 등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7년 내 재검토 할 예정이다.

기본농산물에 관하여는 한-스위스간 별도의 양자농산물협정을 체결, 스위스는 한국농산물의 51%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양허하기로 하였으며, 김치와 쌀 발효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으며, 사과 및 배에 대해서는 쿼터 및 계절관세를 통해 일부 양허하기로 했다. 공산품은 100% 양허하나 29개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해 3년 내 재검토 하며, HS 6단위 기준 267개 품목에 대해서는 EFTA의 역외가공 인정요건(역외가공 부가가치가 제품가격의 10% 미만일 것)을 보다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했다.

품목별 관세철폐 현황

구분	전품목 (기본농산물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농산물
즉시철폐(A)	8,726(86.3%)	8,568(91.1%)	110(27.1%)	48(15.8%)
3년철폐(B1)	388(3.8%)	381(4.1%)	7(1.7%)	-
5년철폐(B2)	395(3.9%)	294(3.1%)	101(24.9%)	-
7년철폐(B3)	138(1.4%)	132(1.4%)	6(1.5%)	-
10년철폐(B4)	123(1.2%)	-	102(25.1%)	21(6.9%)
관세인하(10-50%)	187(1.9%)	-	-	187(61.5%)
TRQ	1(0.0%)	-	1(0.2%)	-
향후 재검토(R)	61(0.6%)	29(0.3%)	32(7.9%)	-
양허 계	10,019(99.1%)	9,404(100%)	359(88.4%)	256(84.2%)
양허제외(E)	95(0.9%)	-	47(11.6%)	48(15.8%)
총계	10,114	9,404(100%)	406(100%)	304(100%)

자료원: 외교통상부

EFTA의 역외가공 인정요건

구분	한·싱 FTA	한·EFTA FTA
지역제한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제한 없음
대상물품	HS 6 단위 4,625 개 품목 공산품 전 품목(일부품목제외)	HS 6 단위 267 개 품목 62 류(메리야스, 뜨개질, 편물 외 의류), 61 류(편물 의류와 그 부속품), 91 류(시계 및 부품) 84 류(원자로, 보일러 등) 85 류(전기기기 등) 39 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인정요건	협정상의 원산지 요건 충족 직접운송	비원산지 재료가격 40% 이하 총재료비중 원산지 재료가격 60% 이상 협정상 원산지 요건 충족 직접운송

자료원 : 외교통상부

(자료원: 외교통상부, 주 스위스 한국대사관)

나. 군수품에 대한 수출허용

스위스연방의회는 지난 2007.9.5 한국으로 장약 및 미사일 부품수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다양한 탄약의 주원료인 장약 5 백 2 십만 프랑 및 미사일 부품 42 만 프랑이 한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장약은 군수품을 납품하는 한국 탄약 생산공장으로 미사일 부품은 한국 공군에 수출된다. 2004 년 말 까지 무기 및 관련제품의 대 한국 수출신청을 거부했으나 2005 년 여름 한국 미사일의 스위스 내 수리허용 여부에 대한 사전질문에 스위스의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 북한방문, 남한-북한의 정상면담 등 가시적인 관계 개선 등이 스위스의회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 기타사항

2000 년 이후 스위스정부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5.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헌법과 관세법에 기초하고 있는 스위스 관세제도는 총 6,863개의 관세품목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율은 MFN 관세율, EC 및 EFTA 관세율, 대 개도국 특혜관세율, 최저 개도국 특혜관세율로 구분 적용되고 있다.

1988년부터 HS 방식에 의한 품목분류체제를 도입하여 총 8단위 세번으로 HS 6단위 세번과 스위스 자체설정 끝자리 2단위 세번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는 선진공업국 중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종량세는 동일한 과세대상 품목군에 있어 고가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값싼 제품에 대해 과세율이 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 일반특혜관세제도

스위스는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72.3월에 도입한 후 81년에 92.2.29까지 10년간 연장하였으며, 92년에 5년 연장한 후 97년부터는 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2007년까지 10년간 시행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98년 3월부터 GSP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GSP의 원산지규정은 당초 UNCTAD에서 정한 원칙에 준하여 수출국내의 완전 생산품 또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수입원자재등 사용비중이 50% 이하 또는 수입품 원자재와 완제품의 HS 관세분류번호가 변경)을 적용하며 이의 입증자료로서 Form A <우편일 경우는 APR> 증명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96년7월부터 공여국 원자재기준이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스위스 내 원자재, 반제품을 사용한 개도국 수출상품의 가공도 산출시 그 원자재, 반제품 사용분을 합산함으로써 개도국의 GSP 수혜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HS 25-97의 공산품에만 적용)

GSP 공여로 인하여 국내수입시장이 교란될 경우 특정국 또는 당해상품에 GSP 공여를 중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GSP 시행 이후 한번도 발동한 적은 없다.

스위스는 '81년 제정된 일반특혜관세 연방법(Zollpraerferenzen-beschluss)의 시행기간을 2007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한국,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싸이프러스, 아랍에미리트연방,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타르, 바하마, 버뮤다, 카이만제도, 포크랜드 제도 등 13개국을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대만은 당초부터 GSP수혜대상이 아니었음) 남아공, 에리트리아, 가자 및 서안지구, 미크로네시아연맹과 CIS의 일원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 키르기스,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트루메니스탄 공화국 등을 GSP 수혜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다. 원산지 규정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3가지로서 EU/EFTA 특혜원산지규정과, GSP 원산지규정 및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EU/EFTA 특혜원산지규정과 GSP 원산지규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품목이거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50%를 충족하거나 또는 HS 세번 변경 (4단위)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EU/EFTA 특혜원산지기준은 94년 1월 자유화되어 제3국의 반제품 사용한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HS 28-29류)의 경우 제3국 원재료를 40%까지, 플라스틱제품(HS 39류)의 경우는 25%까지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GSP 특혜원산지규정에서는 블록경제 내에서의 원자재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원산지 누적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으며 ASEAN 국가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수출국에서의 완전생산품이거나 또는 본질적 변형 (Sufficient Transformation)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3국 원산지 재료가 수출가격의 50% 이하이거나 HS 4단위 세번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원자재와 완제품 간의 본질적 변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스위스는 관세법 제7조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WTO의 Safeguard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과 일치하고 있음. 현재까지 스위스에서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는 대외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세부과 여부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

잠정관세인상(관세법 제7조)뿐만 아니라 잠정수입금지조치(대외경제연방법 제1조)까지도 발동할 수 있으나 이들 조치는 사후 6개월 이내에 연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6개월마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 또는 종료해야만 한다.

현재 발효중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없으며 1974년도에 백포도주의 수입급증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와 1982년도에 포도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조치(6주 후 종료)등 단 2회에 걸쳐 GATT 19조의 Safeguard 조치를 발동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않고 있다.

마. 관세할당제 (Tariff Quota)

스위스는 당초 관세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UR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 3단계 수입 허가제도(three phase system)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품목을 관세화(tariffication) 하면서 관세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스위스는 농산품 과세품목(tariff lines)의 약 15%에 달하는 육류, 사과, 배, 채소, 포도주 등 총 28개 과세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 신설 하였으며, 이중 계절관세 또는 수입금지 적용대상 품목이었던 과일과 야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가 계절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관심품목인 사과와 배도 관세 할당품목으로서 연간 Tariff Quota는 15,800톤이며 동 Quota 한도 내에서는 100Kg당 포장방식에 따라 2-5프랑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Quota를 초과하여 수입시에는 100Kg당 171프랑의 무거운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바. 수입부과금

커피, 차, 코코아 및 쌀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최저 재고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 부과금(import charges)을 부과하고 있음. 커피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Sfr 0.18 /kg (수입액 의 약 2% 상당)이다. 한편, 종전에 설탕을 포함한 여타 품목에 대해 부과되던 수입부과금은 UR협정의 이행과정에서 관세로 전환되었다.

스위스의 물품세는 담배, 맥주 및 정류된 주류(distilled beverages)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은 96.3월 EU와 일치시켜 담배 1갑당 물품세는 99년 1월부터 0.3 프랑이 인상, 약 CHF 2.17 수준이 되었다.

증류식 주류에 대한 물품세는 99년 6월1일부터 국내생산과 수입품간 차별 없이 리터당 CHF29로 단일화하였음.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유류에 대해서는 재정세(Fiscal Tax)가 부과되고 있는데, 유연유에 대해서만 100Kg당 CHF48.5의 재정세가 부과되고 있다.

사. 관세법 개정 주요 내용(2007.7.1 발효)

지난 2007.5.1 스위스 관세법은 유럽연합 관세법의 시스템과 구조와 유사해 졌으며, 통고 및 개념 등에서 유럽연합 관세법의 상당부분을 스위스 관세법에 적용시켰다. 그럼에도 개정 전 스위스 관세법의 근본이 신고의무자에 의한 자진신고는 유지되며, 동 개정법은 2007.7.1일 부로 발효됐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관세신고형태

여행객 또는 국경선 경계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관세신고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세관은 서면 또는 전자신고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나, 관세 할당제가 적용되는 농산물은 반드시 전자신고 해야 한다.

자. 관세신고내용 정정 및 철회

수입관세의무가 발생 후 세액 정정은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누락된 특혜관세의 정정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개정 관세법은 누락 또는 정정돼야 하는 관세에 대한 수입 신고의무자가 적용관세의 부적합을 증빙하는 경우, 기 수입 신고된 제품의 형태 및 소재의 변화가 없는 경우 가능하며, 관세 정정 및 철회는 수입물품의 수입통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품목의 형태 또는 소재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의신청만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차. 농산물

농산물이 자국 내 일시적인 수급부족으로 수입 되는 경우, 자국 내 경제 이해관계와 심하게 엇갈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년 까지 관세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농산물이 관세할당제에 적용 받는 경우, 관세할당기간에 수입된 제품으로 관세할당 외 기간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 수입관세가 상이함으로 수입업자는 새로운 수입관세 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 하여 수입관세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6. 주요인증제도

스위스 표준화 기구인 SNV(Swiss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으로 시장에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법규, 지침, 표준 등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식품과 관련된 많은 품목에 대해 최저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양념류, 품질, 가공,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생산 및 수입 의약품의 국내 시판을 위해서는 범 칸톤 의약품관리국(IKS)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IKS" 허가필 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스위스 전자전기 기술 협회(SEV)의 검사 인증제도가 있다. SEV 검사 인증제도는 의무적 인증대상 품목의 경우 상기 인증 없이 판매, 유통,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국내반입, 판매 시 연방 전기법에 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스위스 내 표준화 관련 협회

- SNV(Swiss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www.snv.ch (영/독/불어)
- SICTA(Swi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ww.sicta.ch
 - 스위스 telecom provider(hardware, software, intergrators) 협회
- electrosuisse(SEV Association for Electrical Engineering, Power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www.electrosuisse.ch
 - 스위스 information, energy, electrical engineering 관련 협회
- SWISSMEM(Swis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www.swissmem.ch
 - 스위스 machine, electrical, metal industry 협회
- sia(Swiss association of engineers and architects): www.sia.ch
 - 스위스 건축, 토목, 환경 관련 전문가를 위한 협회
- VSS(Swiss association of road and transport experts): www.vss.ch
 - 스위스 도시계획, 건설, 교통기반 및 시스템 관련 협회
- NIHS(Federation of Swiss Watch Industry FH): www.nihs.ch
 - 스위스 시계산업 협회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제도 개황

스위스는 WIPO Conventio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greement,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등을 포함, 많은 지적소유권 보호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스위스는 첨단기술분야가 고도로 발달된 국가특성상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국제 규범을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해 취리히 무역관에서 2000년 이후 매년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상표권

스위스의 상표등록 제도와 관련된 법규로는 상표보호 연방법이 있다. 상표 등록 시 유효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추가로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등록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상표등록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상표등록 만료일까지 기간 중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스위스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등록을 한 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동 사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 상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소요건은 구체적인 조건이 사전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스위스 법 상 등록단계에서는 유사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기관도 이를 사전 심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있는 경우 지적소유권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상표권 출원 등록 시 변호사 수수료는 CHF 1,500 수준(US\$ 1,035 수준)이며 스위스 및 EU국가의 상표등록 및 검색수수료는 CHF 700(US\$ 483 수준)이다.

다. 의장권

의장권은 최대 15년간(5년씩 연속 3회) 보호받을 수 있다.

라. 특허권

1954년 6월 제정된 스위스 연방특허법(Patentgesetz, PatG)에 의해서 특허권은 20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갱신이 불가능하다.

마.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 스위스 연방 지적재산권 연구소 (Eidgenössisches Institut fuer Geistiges Eigentum, IGE)
 - 1988년 특허, 상표(인터넷, e-trade 포함), 디자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 지원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관련 업무별 3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www.ige.ch (독/불/이태리/영어 제공)
-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 관련 연구소 (The registry of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홈페이지: www.swissreg.ch
-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정보 (Patent and technology information)
 - 홈페이지: www.espacenet.ch
-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Now Accessible Online for All)
 - 홈페이지: www.ip4all.ch

8. 통관/운송

가. 통관

1) 통관절차 개황

일반적으로 스위스 세관의 통관 절차는 간편한 편이다. 국경지역 혹은 국제공항의 보세구역에는 세관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당해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 시 세관원이 일일이 통관 물품을 검사하면서 통관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통관운송을 대행하는 업자가 세관에 통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 하던다.

2) 수입신고

수입업자는 세관신청서와 함께 인보이스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인보이스에는 통관 물품명세, 상품 인도가격과 보험을 포함한 각종 비용, 순중량 및 총 중량, 원산지가 명기되어야 한다. 스위스의 관세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서 수입되는 물품의 무게 (포장포함)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며 세관 통관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고, 수수료 이외에는 특별히 부과되는 과징금은 없다.

3) 물품검사

수입이 규제되는 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샘플링검사가 대부분이며, 일일이 물품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관은 국민보건 혹은 안보상의 목적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해 제품을 일단 통관 후 샘플을 관련 기관에 보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수입된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분석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강제 반송시키도록 하고 있다.

4) 세관제출서류 및 통관절차

- 제출서류: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중량세부내역서, 원산지증명서
- 통관절차
 - 통관서류 제출
 - 적하목록 제출
 - 물품 검사 및 심사
 - 물품 무게 측정
 - 통관비용 측정
 - 통관증명서 발급
 - 통관비용 지불
 - 영수증 발급
 - 물품 반출

나. 운송

1) 국제공항 및 국제항

취리히(Kloten, www.unique.ch), 제네바(Cointrin, www.gva.ch), 바젤(Mulhouse, www.euroairport.com) 3곳에 국제공항이 있다. 스위스는 내륙국으로서 국제항구가 없으며, 바젤이 라인강에서 로테트담까지 잇는 유일한 내수로 항구이다. 유럽연합 국가는 내륙항을 이용하여 약 1000억 tkm(톤킬로미터)를 통해 매년 약 500백만 톤이 이동되고 있으며, 스위스는 약 50억 tkm정도 이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 국철 (SBB)보다 0.5배 큰 물량으로 스위스 전체 무역량의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저렴한 운송 비와 북/남을 잇는 최적의 라인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젤 라인항은 전체 130만 m²에 해당되는 4개의 항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구는 고속도로, 철도와 연결되고 있다.

- 클라인취니겐항(Kleinhueningen) : 철강, 건조물, 농산물, 액상품목
- 상요한항(St. Johann): 가장 오래된 항구로 건조물을 주로 하역
- 비르스펠덴항(Birsfelden): 건조물, 액상품목
- 이우하펜 무텐츠항(Auhafen Muttenz): 석유, 화학 등 액상품목

몇 년 전 과감한 투자로 하역과 교통망을 위한 신규 투자를 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농산물 및 건조물을 위한 하역장(grain elevators): 385,000 m³
- 선적 화물창고: 80,000 m³
- 기름 및 액상품 창고: 1,250,000 m³
- 커버창고: 250,000 m³
- 오픈창고(Containerterminals): 200,000 m³

2) 운송비 비교

운송가격은 tkm(톤킬로미터)기준으로 가격은 아래와 같다.

- 선박 이용 시: 1.9 Rappen
- 철도 이용 시: 9.5 Rappen
- 고속도로 이용 시: 15.8 Rappen

3) 관련업체

바젤 항과 관련된 선박회사, 하역업체, 창고업체, 항만용역업 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와 라인항 바젤의 담당자를 접촉하면 된다.

- <http://www.portofbasel.ch/index.php?sprache=d&nav=3&subnav=306>
- 업체명: Rheinschiffahrtsgesellschaft Basel
- 주 소: Hochbergerstrasse 160, Postfach, 4019 Basel, Switzerland
- 전 화: +41-61-631-4545
- 팩 스: +41-61-631-4594
- 이메일: rsd@portobasel.ch

4) 주요 운송업체 리스트

- Kuehne & Nagel International AG
 - Dorfstr. 50, 8834 Schindellegi SZ, Switzerland
 - Tel: 044 786 95 11
 - Fax: 044 786 95 95
 - Turnover 2004: Sfr 11.5 billion
 - Employees: 21100

- Panalpina Welttransport (Holding) AG
 - Viaduktstr. 42, Postfach 4002 Basel, Switzerland
 - 4051 Basel BS
 - Tel: 061 226 11 11
 - Fax: 061 226 11 01
 - E-Mail: info@panalpina.com
 - Turnover 2004: Sfr 7.4 billion
 - Employees: 13200

- Gondrand AG
 - Viaduktstr. 10, Postfach 3047 4002 Basel, Switzerland
 - 4057 Basel BS
 - Tel: 061 285 30 00
 - Fax: 061 281 84 28
 - E-Mail: gd.gondrand@gondrand.ch
 - Homepage: www.gondrand.ch
 - Turnover: Sfr 250 million
 - Employees: 340

- Fracht AG
 - Birsigstr. 79, Postfach 4011 Basel, Switzerland
 - 4054 Basel BS
 - Tel: 061 287 95 55
 - Fax: 061 287 97 50
 - Homepage: www.fracht.com
 - Turnover: Sfr 614 million
 - Employees: 600

- M+R Spedag Gruppe
 - Kriegackerstr. 91, 4132 Muttenz BL, Switzerland
 - Tel: 061 466 91 11
 - Fax: 061 461 70 36
 - E-Mail: info@mrspedag.com
 - Turnover: Sfr 425 million
 - Employees: 820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유럽중앙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 자유 시장경제, 안정된 정부 및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중립성, 다국적 언어 사용 인력보유 등의 이유로 스위스는 다국적 기업의 유럽 본부 설립 기지로 각광 받고 있다. 금융, 통신, 우편, 교통과 전기, 수도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발달됐으며, 물가 상승률도 유럽의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가 매우 우수하여 현지 인력은 유럽 내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41.7시간으로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사분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물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일반 제조업분야의 투자는 경제성 측면에서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위스의 첨단기술이나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목적이라면 스위스가 적격 투자진출대상지역이나, 첨단기술이 필요치 않는 일반 소비재의 경우에는 높은 생산코스트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높은 생산코스트 문제 해결을 위해 스위스 내에서 제조활동을 하고 있었던 스위스 기업들 조차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키 위해 생산기반을 동구지역 등으로 이미 이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 제조업분야에는 시계 및 제약분야가 투자 진출해 있으며, 시계의 경우 스위스 제품을 최고로 간주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겨냥하여 부품을 국내에서 들여와 스위스에서 국내산 부품과 스위스 Movement를 결합하여 "Made in Switzerland" 로 원산지 표기 후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투자지로서의 장점

1) 장점

□ 비용

스위스의 국가신용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미국, 영국 및 덴마크와 비교 시 자금조달이 가장 저렴한 국가이다. 선진주요국가와 비교하며 스위스 가장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1.5~2% 수준이다.

주요국 국가신용도 현황

순위	국가	신용도
1	스위스	95.2
2	미국	93.7
3	영국	93.6
4	덴마크	93.0
5	네덜란드	92.9
6	독일	92.4
	캐나다	92.4
8	오스트리아	92.1
9	아일랜드	90.5
10	벨기에	89.1
11	이탈리아	84.9
12	일본	83.2

자료원: Location Switzerland

스위스 에너지비용은 선진국가에 비해 저렴하다. 특히 유류세가 저렴하여 수송, 운송용 차량에 쓰이는 기름값이 저렴하고, 산업 및 가정용 전기요금도 에너지 시장의 지속적인 민영화로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가격은 계속하여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2008.1.1 새로운 전기보급법이 발효됨에 따라 연간 10만 KWh 이상을 소요하는 기업주는 전기공급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스위스 전력시장은 약 50%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5월부터 재생에너지 생산업체는 재생에너지를 스위스연방 에너지청에 등록하면, 2009년부터 생산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비용(2005년 1분기 기준)

국가	산업용 원유(톤)	Unleaded Premium 95 RON(1리터)	산업용 전기(KWh)
미국	221.28	0.513	0.0520
스위스	221.66	1.170	0.0884
독일	250.72	1.465	0.0759
프랑스	266.76	1.406	0.0526
오스트리아	296.47	1.221	0.1010
영국	309.49	1.514	0.0781
이탈리아	329.30	1.486	0.1704
아일랜드	363.20	1.232	0.1885
일본	399.27	1.116	0.1348

자료원: Location Switzerland

□ 노동시장 유연성

2004년 기준으로 산업국가와 비교한 스위스 인건비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다음으로 비싸다. 그러나 1인당 생산성, 노동강도, 휴가 및 병가 등을 고려 시 여타 비교 국가 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연간 근무시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나라는 2,144시간을 근무하는 싱가포르, 미국이 1,800으로 2위이며, 스위스는 1,832시간으로 독일,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대비 약 연간 300시간을 더 많이 일한다. 또한 스위스 노동시장 유연성은 51개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인근 국가인 독일 49위, 프랑스는 50위를 기록했다.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고용, 해고, 최소 임금 등 평가대상국 노동시장 규제를 비교하여 가장 유연한 국가에 10점을 부여했다.

국제노동시장의 유연성비교

국가	순위	점수
홍콩	1	8.39
싱가포르	2	8.19
덴마크	3	7.60
스위스	4	7.48
미국	8	6.55
오스트리아	19	5.32
영국	22	5.02
아일랜드	23	4.96
이탈리아	31	3.88
네덜란드	33	3.68
독일	49	2.35
프랑스	50	2.34

자료원: Location Switzerland

□ 조세

스위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약 21.30% 수준으로 아일랜드 독일(41.63%)에 비교하면 거의 2 배정도 저렴하다.

주요국가별 영업이익에 대한 세율

국가	세율(%)
아일랜드	12.50
스위스	21.30
스웨덴	28.00
덴마크	30.00
영국	30.00
이탈리아	33.00
벨기에	33.99
오스트리아	34.00
프랑스	34.42
네덜란드	34.50
미국	35.00
독일	41.63

자료원: Location Switzerland

현재 스위스 부가가치세율도 일반적으로 7.6%이며, 식료품, 잡지, 신문 등에는 2.4%. 숙박 및 요식업에는 3.6%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는 EU 가입국가에 비해 3배 이상 저렴하다.

국가별 부가가치세율 현황(2005년 기준)

국가	최고세율(%)	최저세율(%)
스위스	7.6	2.4;3.6
룩셈부르크	15	3;6;12
독일	16	7
스페인	16	4;7
영국	17.5	5
그리스	19	4.5;9
네덜란드	19	6
프랑스	19.6	2.1;5.5
이탈리아	20	4;10
오스트리아	20	10;16
벨기에	21	6;12
아일랜드	21	4.8;13.5
포르투갈	21	5;12
핀란드	22	8;17
덴마크	25	
노르웨이	25	7;11
스웨덴	25	6;12

자료원: Location Switzerland

▣ 투자유치지원기관

- Location Switzerland(www.locationswitzerland.ch)
 -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651 CH-8035 Zurich
 - Tel. +41 (0)43 300 56 00
 - Fax +41 (0)43 300 56 05

-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www.seco-admin.ch)
 -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Effingerstrasse 31-35 CH-3003 Bern
 - Tel. +41 (0)31 323 07 10
 - Fax +41 (0)31 324 86 00
 - E-mail: invest@seco.admin.ch

- Osec Business Network Switzerland(www.osec.ch)
 -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492 CH-8035 Zurich
 - Tel. +41 (0)1 365 51 51
 - Fax +41 (0)1 365 52 21
 - E-mail: info@osec.ch

- KTI/CTI(www.kti-cti.ch)
 - The Innovation Promotion Agency Effingerstrasse 27 CH-3003 Bern
 - Tel. +41 (0)31 322 21 43
 - Fax +41 (0)31 322 21 15
 - E-mail: info@kti-cti.ch

- SwissParks(www.swissparks.ch)
 - Club of Swiss Technology Parks and Business Incubators Lerchenfeldstrasse 5
9014 St. Gallen
 - Tel. +41 (0)71 274 75 00
 - Fax +41 (0)71 274 71 61
 - E-mail: info@swissparks.ch

- Fiscal Information Office(www.estv.admin.ch)
 - Eigerstrasse 65 CH-3003 Bern
 - Tel. +41 (0)31 322 71 48
 - Fax +41 (0)31 322 73 49

- Swiss Fiduciary Association STV/USF(www.stv-usf.ch)
 - Schwarztorstrasse 26 CH-3001 Bern
 - Tel. +41 (0)31 382 10 85
 - Fax +41 (0)31 382 10 87
 - E-mail: info@stv-usf.ch

2) 단점

주요 국가의 생활 여건을 비교한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취리히)가 세계에서 가장 김치찌개(1인분 기준, \$34.2)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소매가격이 인근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 보다 약 15% 이상 비싼 것으로 스위스 바젤경제연구소는 발표했다.

2005년 기준 스위스 소비자 가격은 인근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와 비교 약 15%가 높으며, 제품군에 따라 약간 상이하지만, 식료품분야가 비식료품 분야 보다 소매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4개 국가는 스위스보다 비용측면에서 평균 23%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물품구입비용 및 물류, 유통, 광고비용이 스위스 보다 현저하게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소매업체가 국내외 물품조달에서 비교 대상 국가 보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유로 소규모로 생산 및 제조되는 자국 농산물의 경쟁체제 미흡과 해외 농산물수입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수입 장벽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스위스 에너지가격도 식료품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비용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물 및 공장건설허가 취득기간이 길고, 시정 또는 보완조치로 수반되는 추가적 비용 또한 스위스 소비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위스소매협회는 스위스 소매시장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농산물분야 개혁, EU와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Cassis de Dijon 제도 도입과 관세 및 기타 수입장벽 철폐가 주요 이슈임.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소비자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 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소매협회는 시장자유화를 위해 라이선스 경과 제품에 대한 병행수입허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병행수입제도 허용을 통해 스위스 소매가격을 연간 14억 스위스 프랑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스위스 정부의 전기 및 에너지시장의 지속적인 시장 자유화 노력으로 에너지 가격인하를 기대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2007년 12월 기준, 투자관련 데이터는 2006년도 수치가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330억으로 2004,2005 두 해 동안 외국계 금융 및 홀딩기업의 투자금액회수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높은 실적을 거양했다. 대부분 미국계 금융 및 홀딩회사는 미국 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투자 이익금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액이 80억 규모로 집계됐다.스위스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외국계기업에 의한 스위스보험사의 인수를 꼽을 수 있으며, 보험분야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액이 130억 프랑을 기록했다. 화학 및 합성수지와 은행 분야에도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각각 50억, 20억 프랑이 투자된 반면,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과 기타 서비스분야는 투자금액이 각각 20억, 10억 프랑이 회수됐다.

연도별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현황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산업	672	6,650	2,981	978	6,421
- 화학 및 합성수지	205	2,522	2,545	955	4,725
- 금속 및 기계	165	1,797	423	-122	483
- 전기, 전자, 시계, 에너지	264	1,953	286	-192	1,476
- 기타 산업 및 건설	38	378	-273	337	-263
서비스업	9,111	15,575	-1,822	-2,900	26,524
- 무역	1,624	4,409	1,773	926	979
- 금융 및 홀딩	8,090	9,012	-4,531	-7,996	13,252
- 은행	502	733	198	1,261	1,522
- 보험	-1,461	467	-106	309	13,370
-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57	807	-280	1,870	-2,065
- 기타 서비스업	413	146	1,125	730	-563
합계	9,783	22,224	1,159	-1,922	32,945

자료원: 스위스국립은행

스위스 최대 외국인직접투자대상국가는 유럽연합으로 투자금액은 230억에서 290억 프랑으로 증가했으며, 유럽국가 중 프랑스의 대 스위스 직접투자는 140억 프랑으로 여타 유럽연합국가 보다 월등하게 높다.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80억 프랑), 룩셈부르크(30억 프랑), 오스트리아(20억 프랑)이다.

연도별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현황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유럽	7198	14,159	-3,924	22,771	28,600
-유럽연합	7,984	14,125	-4,034	22,803	28,506
..벨기에	-266	4,807	320	-1,073	71
..덴마크	-108	-33	314	1,037	922
..독일	-321	-21	-295	768	1,070
..프랑스	2,685	939	784	2,158	13,910
..이탈리아	410	-93	-2,131	211	382
..룩셈부르크	314	314	576	-278	3,382
..네덜란드	297	6,025	-2,437	9,102	7,954
..오스트리아	105	-9	735	9,826	2,391
..스웨덴	189	244	-25	-913	-36
..스페인	34	29	122	500	34
..영국	4,726	1,765	-1,874	1,370	-1,902
-기타유럽	-786	34	110	-31	95
북유럽	3,075	7,213	7,007	-25,557	3,959
-캐나다	193	290	111	-455	27
-미국	2,883	6,923	6,896	-25,103	3,932
중남미	24	932	-1,400	878	267
-Offshore	35	941	-1,967	653	245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안	-515	-79	-524	-14	119
-이스라엘	-310	26	33	62	54
-일본	-291	-263	-229	-117	-90
합계	9,783	22,224	1,159	-1,922	32,945

자료원: 스위스국립은행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누계)는 전년대비 420억 증가한 2660억 프랑을 기록했다. 누계기준 금융 및 홀딩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전체의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및 홀딩을 제외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도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이런 결과는 스위스 보험회사가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인수에서 초래된 것이다.

산업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10억 증가한 480억 프랑을 기록했으며,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현저하게 외국인투자가 증가한 산업분야는 화학 및 합성수지(+60억 프랑), 전기, 전자, 시계 및 에너지(+40억 프랑)이다.

연도별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현황(누계)

(단위: 백만 스위스 프랑)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중
산업	27,271	36,519	37,299	37,395	47,721	17.9
- 화학 및 합성수지	10,925	15,432	17,457	17,084	22,947	8.6
- 금속 및 기계	3,721	4,928	5,555	6,121	6,841	2.6
- 전기, 전자, 시계, 에너지	8,135	10,078	9,086	8,643	12,467	4.7
- 기타 산업 및 건설	4,490	6,082	5,201	5,547	5,466	2.1
서비스업	145,809	164,147	186,383	187,134	218,325	82.1
- 무역	19,495	21,340	31,197	33,515	35,073	13.2
- 금융 및 홀딩	89,960	102,345	110,280	103,894	120,570	45.3
- 은행	24,541	26,536	27,287	29,687	32,059	12.1
- 보험	3,498	4,022	5,405	5,786	16,684	6.3
-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4,526	5,822	5,801	7,166	7,247	2.7
- 기타 서비스업	3,790	4,082	6,413	7,087	6,691	2.5
합계	173,080	200,666	223,682	224,529	266,045	100.0

자료원: 스위스국립은행

외국인직접투자(누계기준) 유럽연합으로부터 투자는 1,930억 프랑이며,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3%를 차지한다. 프랑스 대 스위스 투자는 기업인수 등을 통해 120억 프랑이 늘어난 300억 프랑을 기록해 프랑스는 네덜란드 다음으로 제 2위의 투자국가로 입지를 세웠다. 독일은 외국인직접투자실적(누계)은 230억 프랑 이며, 미국은 610억 프랑으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수익은 70억 증가한 290억 프랑을 기록했다. 2006년의 수익감소는 금융 및 홀딩기업분야 수익 감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수익금 중 160억 프랑은 스위스내 외국기업자회사에 재투자됐으며, 140억 프랑은 모기업으로 해외송금 됐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한국 기업의 저조한 투자 실적

한국과 스위스 양국 간 무역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1971년4월7일 ERPI 투자촉진 및 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스위스 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은 한국의 대 스위스 직접투자 금액이 미미하여 별도로 투자실적을 집계하지 않는다.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기준으로 스위스에 직접 투자된 금액은 98,462천 불이며 투자건수는 63건이다. 2002년 GM 대우와 LG 화학이 투자신고 하였으며, 2005년 및 2006년에 한국 MCM사가, 2007년에 대한뉴팜이 투자 신고했다.

연도별 한국의 대 스위스 투자 현황(2007.9월 기준)

(단위: 천 불)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2	1	445	0	0
1983	0	0	0	0
~
1991	0	0	0	0
1992	3	266	1	266
1993	0	0	0	0
1994	6	951	6	948
1995	1	1,700	1	1,700
1996	5	6,472	4	5,554
1997	4	9,718	3	8,948
1998	4	2,166	8	612
1999	2	2,900	2	2,900
2000	0	0	0	0
2001	3	138	3	138
2002	4	22,086	4	22,019
2003	1	3,441	1	3,441
2004	1	16	1	16
2005	2	3,671	1	2,430
2006	9	5,719	15	6,072
2007	9	67,335	11	43,418
Total	55	127,022	63	98,462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현지 진출 지상사로는 삼성전자, LG화학, GM대우(Chevrolet 유럽), 대한항공, 성주 인터내셔널(MCM) 등이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스위스 정부 구조는 연방, 주(26 개)와 지자체로 나뉜다. 스위스의 세금제도 또한 정부 구조를 따라 연방, 주와 지자체 각기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정부의 세금 제도는 완만한 성격을 보여 기업설립에 있어서는 주정부와 지자체 세율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보다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들은 보다 매력적인 세금제도를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연방, 주, 지자체 모두 세금을 면제하며 거주회사에게는 주와 지자체가 면세혜택을 주고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동안 법인세와 자본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면제기간'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를 수령하려면, 투자 프로젝트가 지역 노동시장, 지역 경제 그리고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 심사위원들이 신청회사의 보고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서는 투자 이전에 해당 지자체를 접촉,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투자장려/제한/금지 분야

스위스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와 투자 유치 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외국의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의 대 스위스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베이스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연방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는 투자유치 성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분야의 투자 및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은 은행-보험-펀드회사, 호텔 및 요식업, 의사-약사-변호사, 와인 도소매업, 인력파견업체, 카지노, 무기취급관련업 등이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http://bewilligungen.kmuinfo.ch>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은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스위스은행위원회의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며 신규 의약품 생산 시에도 Swissmed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EU지침 및 임상 실험을 통해 합격여부가 결정되고 등록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스위스 국적 선박운행 및 국내 항공사의 운행 등에는 외국인 진출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다.

스위스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매입 허가제를 '97.10.1일부터 폐지하였으며, 생산, 영업 및 서비스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토지의 구입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12개월의 단기 체류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은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별 부동산유형별 취득 가능 여부

구분	영주허가(C)	체류허가 (12개월, B)	단기거주허가 (12-18개월, L)	체류허가 없음
주거목적의 토지매입(3000㎡까지 매입가능,구입1년 안에 공사착공)	가능	가능	제한	제한
상업 및 산업단지 내 토지구입 (구입 후 1년 내 공사 착공)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매입	가능	가능	제한	제한
주거목적의 다세대 주택 매입	가능	제한	제한	제한
영업목적의 부동산 매입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별장	가능	허가요	허가요	허가요

자료원:Immobilien Kaufen und Verkaufen(www.bnlawyers.ch)

다. 투자인센티브

□ 연방정부

스위스 연방의회는 1995.10.6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침체된 17 개 주정부(칸톤) 전체 또는 일부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동 지역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투자자금 일부에 대한 은행융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동 지원 프로그램은 두 차례 연장을 통해 2008말 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까지는 세제혜택만 유효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산업의 다각화를 가능케하고 신규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 프로젝트로 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기간	비고
보증제도	시중은행에서 대출 시 투자자금의 1/3 까지 연방정부 보증제공	최대 8년	2007.9월 까지만 유효
세제혜택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연방직접세 면제	최대 10년	2008년말 까지 유효

자료원: Location Switzerland

2000-2006 연방정부지원 투자프로젝트 현황

구분	2000	2004	2005	2006	2000-2006
지원프로젝트 (개)	35	48	58	45	260
투자금액(CHF 백만)	266.1	480.7	875.3	679.9	3,606
신규일자리창출	1,446	1,825	2,879	2,390	12,698

자료원: SECO

□ 주정부

연방정부가 지원을 결정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범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하며, 세제혜택, 정착지원 등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투자지역, 금액,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주정부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은행	-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 대출이자율의 경감 또는 주정부의 이자비용 부담 - 주정부의 저리 또는 무이자 대부 - 1회성 금융지원
입지	- 공장입지 또는 사무실 알선 - 산업공단의 공간활용설계 시 금전적 지원 - 기존 공장 등 산업공간의 재설계 시 금전적 지원
인력	- 채용인력의 수습기간 급여 보조
세제	- 투자초기 세제혜택

자료원: Location Switzerland

라. 투자관련 유관기관

- Location Switzerland
 -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651 CH-8035 Zurich
 - Tel. +41 (0)43 300 56 00
 - Fax +41 (0)43 300 56 05
 - www.locationswitzerland.ch

-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Effingerstrasse 31-35 CH-3003 Bern
 - Tel. +41 (0)31 323 07 10
 - Fax +41 (0)31 324 86 00
 - E-mail: invest@seco.admin.ch
 - www.seco-admin.ch

- Osec Business Network Switzerland
 -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492 CH-8035 Zurich
 - Tel. +41 (0)1 365 51 51
 - Fax +41 (0)1 365 52 21
 - E-mail: info@osec.ch
 - www.osec.ch

- KTI/CTI
 - The Innovation Promotion Agency Effingerstrasse 27 CH-3003 Bern
 - Tel. +41 (0)31 322 21 43
 - Fax +41 (0)31 322 21 15
 - E-mail: info@kti-cti.ch
 - www.kti-cti.ch

- SwissParks
 - Club of Swiss Technology Parks and Business Incubators Lerchenfeldstrasse 5 9014 St. Gallen
 - Tel. +41 (0)71 274 75 00
 - Fax +41 (0)71 274 71 61
 - E-mail: info@swissparks.ch
 - www.swissparks.ch

- Fiscal Information Office
 - Eigerstrasse 65 CH-3003 Bern
 - Tel. +41 (0)31 322 71 48
 - Fax +41 (0)31 322 73 49
 - www.estv.admin.ch

- Swiss Fiduciary Association STV/USF
 - Schwarztorstrasse 26 CH-3001 Bern
 - Tel. +41 (0)31 382 10 85
 - Fax +41 (0)31 382 10 87
 - E-mail: info@stv-usf.ch
 - www.stv-usf.ch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원칙적으로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외국인이 사전허가 또는 신고없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과 노동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진출형태는 신규법인설립, 기존주식취득, 합작법인설립, 기술 제휴 및 지사설립을 분리된다. 외국인의 대표적인 투자 형태는 현지법인설립(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과 지사 설립이다.

□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

최소 3명의 주주로 구성, 이 중 이사의 50%는 스위스 국적 소비자로 거주지 또한 스위스로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인 경영 주식회사도 흔하다. 최소 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으로 이중 50%는 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법인설립 등기 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주요기관으로는 주주총회(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사회(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대표이사(업무집행 및 회사대표) 및 감사(업무감사 및 회계감사)가 있다.

□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2008.1.1 시행예정)

회사설립에는 최소 2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이 중 50% 즉 1명은 스위스 거주 스위스 국적자야 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1인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최소 설립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100% 주금 납입해야 법정자본금의 상한선은 200만 스위스 프랑이었으나, 자본금 상한선 폐지 및 설립자본금의 50%만 주금납입 의무가 있다. 지분 양도는 관보에 공지 해야 했으나, 상법개정 이후에는 서면 계약을 통해 지분양도가 가능하다.

□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법인등기의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경영권은 해외 모기업에 있으며, 최소 법정자본금은 없다.

설립 형태별 장단점

	개인사업체	합작사업체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자회사
설립	특별한 설립 절차 없음; 연간 매출 CHF75,000이상 사업자등록 의무	특별한 설립절차 없음; 사업자등록 의무	법인등기의무 사업자등록의무	법인등기의무 사업자등록의무	사업자등록 의무
목적	개인의 사업	무역/생산.	무역/생산.	무역/생산.	모회사의 경영권 하에 사업
경영권	소유주	동업자 모두	주주	동업자	모회사
설립자	내국인, 외국인	동업자중 1명 스위스 거주 국적자	최소 3명의 설립자 필요(50%이상 스위스 국적보유자)	최소 1명 (50%이상 스위스 국적보유자)	모회사
최소 자본금	-	-	CHF10만, (주금납입최소5만)	CHF 2만 (주금납입최소50%)	의무 자본금 없음
장점	편리성	중소기업에게 적합, 기업의 국적 제한 없음	외국투자자의 요구 조건 과 일치, 투자가 익명성 보장, 유한 책임, 간편한 주식 양도	경영권자의 국적 제한 없음, 유한 책임	자본금 의무 없음, 저렴한 설립 비용, 스위스 국적의 경 영권자 의무 없음
단점	책임여부	책임여부, 사회복지보험 의무	비용, 이중과세	복잡한 주식양도절차, 구조조정의 융통성	스위스 자회사 에 대한 책임 없음

자료원: Greater Zurich Area AG

나. 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 전

영업허가 획득

카지노 운영, 은행 업무, 호텔 및 요식업 등 일부 업종은 영업허가를 얻어야 하며 www.bewilligungen.zh.ch/www.arbeitsbewilligungen.zh.ch 에서 영업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연간 매출이 75,000 스위스 프랑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스위스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여 회사법인 등기 전에 부가가치세납세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유사상호의 검토

지정한 회사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업 등기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www.zerfix.admin.ch/ www.gruenden.ch

2) 설립 진행

자본금확정 및 주금 납입

주식회사는 법정 최소 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1주의 액면가는 최소 1 Rappen 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금 납입의 종류(현물, 현금)를 확인한 후, 최소 법정 자본금의 50%인 5만 스위스 프랑을 현금으로 주금납입 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최소 법정자본금은 2만 스위스 프랑으로 2만 프랑 전액을 주금 납입해야 하며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주요기관 및 임원직 확정

주식회사의 주요기관 및 임원직은 주주총회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 대표이사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 및 감사가 있다.

3) 회사설립

상업 등기소 등록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회사 소재지 상업 등기소에 회사등록을 함으로써 회사가 설립된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아래 법인설립 필요서류 참조

□ 법인설립 필요서류의 검토 조치(유한회사, 주식회사 동일)

법인설립 필요서류가 준비 완료되며, 법인설립등기 접수 전 주(칸톤)정부 상업 등기소에 서류가 올바르게 준비 됐는지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사전 검토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2~300 스위스 프랑이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 공증 (유한회사, 주식회사 동일)

준비된 법인설립 서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공증 시 설립자(발기인)가 직접 공증을 받거나 공증된 위임장을 소지한 법적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한 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서명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은 공증사무소 또는 상업 등기소에서 할 수 있고 비용은 1개 서명 당 공증사무소는 20~30스위스 프랑, 상업 등기소는 10 스위스 프랑을 청구한다.

□ 상업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록 및 관보 공고

법인설립신청서는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상업 등기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법인설립신청서는 담당자가 제출 서류의 정확성, 누락여부 및 법률의 위배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 약 7일 후 주정부 상업 등기소에 등록 된다.

주정부 상업 등기소는 법인설립등기내용을 연방 정부 상업 등기소에 보내고 접수 후 약 2일의 검토기간을 거친 후 연방정부가 승인을 하면 법인설립등기는 완료된 것이다.

법인설립등기 후 3일 이내에 법인설립을 스위스 관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 비용

- 기본수수료: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600 스위스 프랑 (자본금 20만 스위스 프랑인 경우 할증 수수료 납부)
- 기타 수수료
 - 임원의 추가 등재 시: 20 스위스 프랑/업종
 - 서명자 추가 게재 시: 30 스위스 프랑/서명자
 - 신청서처리 행정수수료: 70 스위스 프랑
 - 등기부등본 발급: 50 스위스 프랑
 - 스위스 관보 법인설립 공고: 120 스위스 프랑
 - 행정수수료: 5~150 스위스 프랑

□ 주금납입금의 회사계좌로 이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며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은 법인계좌로 이체된다.

다. 법인설립 서류(주식회사/유한회사)

- 발기인(대리인),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회사 상호 및 소재지 법인설립등기신청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서명과 서명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회사서명을 해야 하므로 모든 서명은 공증 받아야 한다
- 공증된 창립사항보고서
- 정관(법적 의무기재사항인 목적, 상호, 1 주 금액, 발행한 주식 총수,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 감사 및 이사의 취임승락서
- 창립총회이사록
- 주금납입보관증
- 회사 소재지 증명서
- Lex-Friedrich: 회사가 영업의 용도 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라. 설립비용 및 설립기간

□ 설립 비용

주식회사설립은 개인회사 설립보다 설립비용이 더 많음. 한 예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설립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본금 1백만 스위스 프랑의 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비용은 약 7,000 스위스 프랑 소요된다.

법인설립비용은 컨설팅비용과 법인설립을 위한 수수료로 나뉘며, 상업 등기소 등기, 공증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약 2000 스위스 프랑이 소요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컨설팅 비용이 약 2,000~5,000 스위스 프랑이다.

채권발행비용은 자본금의 1%이나, 자본금이 1백만 스위스 프랑 또는 자본증액분이 1백만 스위스 프랑까지는 채권발행수수료가 없다.

□ 법인설립소요기간

주식회사(AG) 및 유한회사(GmbH) 설립소요기간

구분	설립기간(단위: 주)					
	1	2	3	4	5	6
사전검토, 업체등록 및 회사명(허가)	★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		★				
자본금 납입			★	★		
설립 및 설립증명서 발급			★	★		
칸톤 공공일지 발행					★	
경영권자의 사업자등록						★
납세의무등록						★

자료원: Greater Zurich

마. 지사 설립

□ 지사 설치 신청

지사 설립 신청은 자사 소재지의 상업 등기소에 해야 하며, 등기신청서는 사장, 부사장, 비서 또는 이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회사서명, 회사명, 서명권자의 모든 서명은 공증 후 제출해야 하며 서명권자의 모든 서명을 각각의 서명란에 작성 후 제출한다.

서명권의 모든 서명과 지사 설립 등기신청 서명은 공증사무소 또는 상업 등기소에서 공증을 받는다.

□ 모기업의 등기부 등본 제출

모기업의 등기부 등본은 모기업 소재의 관할관청 또는 스위스 영사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자본금내역/이사회/감사원 등 내용 포함)

□ 모기업의 정관 제출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스위스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제출한다.

□ 모기업의 지사 설치 및 지사 대표자 임명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제출

의사록은 대표이사에 의거 서명되어야 하며 지사 대표자는 직접 서명한 취임승락서를 공증 후 제출한다.

의사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해외지사설치결정, 지사의 상호, 지사의 서명권자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서명권의 종류(단독 서명권자, 공동서명권자 등), 지사의 소재지이다.

□ 번역

외국어로 작성된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참고사항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지사형태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은행위원회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허가 취득 전에는 상업 등기가 불가능 하다.

바. 공장설립 절차 개요

스위스에서의 공장설립 절차는 타당성 조사에서 언급한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세한 내용은 타당성 조사에서 언급한 절차를 참고하면 되며, 스위스는 전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비싼 국가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분야의 투자는 사실 인건비 문제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고용문제

스위스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고용문제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스위스에서 노동허가를 득하기가 쉽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현지인 고용비율 조건을 맞출 경우 현지법인을 운영할 자질 높은 경영자와 기술자는 비교적 쉽게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2) 공장 운영에 따른 세금문제

한편, 스위스의 세제는 세가지 차원, 즉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기초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입지 고려 시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반면, 26개 주의 세율은 서로 많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세율은 주세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스위스의 모든 소득세는 등급화되어 있으며, 연방 소득세율은 3.63%와 9.8% 사이임. 소득세는 주에 따라 1년 또는 2년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각기 상이한 세금 산정기간과 세율은 납세 계획과 공장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이다.

6. 투자입지여건

가. 투자형태 결정

스위스투자진출형태는 신규법인설립, 기존주식취득, 합작법인설립, 기술제휴 및 지사설립으로 분리됨. 외국인의 스위스 내 대표적인 투자형태로는 현지법인설립(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과 지사 설립이 있다.

스위스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형태는 주식회사(AG)이며, 합작투자나 지분참여 방식은 흔치 않다. 스위스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GmbH가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기업 형태로 외국인 투자가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형태인 AG형태로 투자하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설립 시 최소한 5만 스위스 프랑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불해야 한다. 주식발행은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최소 액면가액은 10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 또는 외국의 어떤 사람이나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나.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스위스에서의 기업 설립 및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주 정도이며, 계획추진 단계에서 고려할 많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 먼저 설립회사 소재지 선정으로서 이는 세법, 활용가능 노동력 및 승인 가능성, 공장 이용가능성 및 비용 등이 주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주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고용문제를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 외국 노동자들은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노동이 가능하다.
- 이외에 세금문제를 세밀히 따져 보아야 하는데 외국기업들은 스위스 내 항구적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스위스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에는 100% 외국인 소유의 기업설립이 가능하며, 정부의 규제도 거의 없는 편이 나, 은행과 보험분야는 허가가 필요하고 또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 파트너 선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는 반드시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적인이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스위스인을 이사로 지정해야 하며 관리자는 스위스 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단독 서명권을 가진 관리자 중 최소한 1인 또는 합동 서명권을 가진 관리자 중 최소한 2인은 스위스 거주인이어야 함을 감안하여 파트너를 선정 해야 한다.

라. 등록

회사 소재지를 결정하고 나면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ER)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서류에는 회사명, 자본금, 설립목적, 이사 및 관리자의 성명, 그리고 서명권자의 성명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등기서류는 등록된 공증인에 의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인증된 번역가에 의해서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 투자입지

스위스는 산업구조 특성상 대량 생산체제의 제조업은 발달되어있지 아니하며, 주로 중소 규모의 첨단기술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유사한 공단지대는 발달 되어 있지 않다. 다만 스위스의 3대 공업지역으로는 취리히, 바젤, 제네바/로잔 지역에 밀집한 지역은 한국의 공단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이 발달한 거의 모든 지역에는 Industry Zone의 명칭이 붙은 지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단과는 상이하며 주로 사무실 또는 중소규모의 제조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규모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니다. 입지선정 시 투자관련 정부기관 및 서비스기관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7. 노무관리

가. 개황

750만 인구 중 52%인 360 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노동력의 26%정도를 외국노동력이 차지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법정 최소 휴일, 최대 정년 등을 규정한 고용 계약에 관한 연방법률에 일차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나, 많은 경우,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들간에 준수되는 노동협약 (Agreement in the Engineering Industry)에 따르고 있다. 동 협약은 보통 노사간의 평화협정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평화 유지를 위한 상호간의 의무, 쟁의행위의 통일, 모든 갈등을 상호 협의와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사내와 경제부문 에서의 노사의 의무 등이 명시되어있다.

나. 임금수준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돼 임금수준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취리히(Zurich)와 바젤(Basel)지역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외국인 기업의 월평균 임금 (스위스 프랑)

구분	임금	구분	임금
중간 관리자	8,000 ~ 12,000	비서 (2개 국어)	4,500 ~ 6,500
숙련 기능공	3,700 ~ 4,500	비서 (3개 국어)	5,200 ~ 6,500
미숙련 기능공	2,700 ~ 3,500	유자격 회계사	6,000 ~ 8,000
엔지니어	7,000 ~ 10,000	컴퓨터 프로그래머	6,000 ~ 7,000
사환	3,700 ~ 5,000		

자료원: Adecco, 2005년

다.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휴무) 사무실뿐 아니라, 공장, 건설 현장 등 작업장에서의 주당 정규 근무시간은 40-42시간이며, 주5일 근무가 보통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시간외근무는 25%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휴가혜택을 주어야 한다. 초과근무는 연간 2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휴가제도

휴가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유급휴가: 연간 최소한 4 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20 세 이하의 고용인에 대하여는 최소한 5 주간의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 임신출산휴가: 연간 유급휴가는 임신출산휴가와 구별되어야 하며 임신출산휴가는 14 주이며 임신출산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 질병, 사고, 법적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결근시의 급여 지불: 고용자가 질병이나 사고 또는 법적 의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마. 노동생산성

스위스는 고 임금국가로 임금 수준이 타 유럽 국가보다 높은 반면, 노동 생산성이나 숙련도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고, 결근률이 적으며 근무시간도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편이다.

바. 해고

1) 노동법상의 해고절차

계약 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약통고 없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가능하며, 단 10년 이상 고용했을 때 3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해고코자 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함께 1차년도 계약기간 중에는 1개월 전에, 2차년도 이후 제9차년도 기간 중에는 2개월 전에 그리고 10차년도 이후부터는 3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함으로써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차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 양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당사 자간에 사전통고에 의해 해약이 가능하며 해약통고기간은 계약 기간 명시된 경우와 동일하다.

적법한 해고 (적법한 해고사유에 의한 적법한 해고통고기간 준수)시의 퇴직금 지불은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은 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50세 이상의 고용인이나 20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을 해고시킬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고용인이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인 배우자나 직계 비속 또는 고용인의 타 부양 가족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

퇴직금은 최소한 2개월 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고용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되 최대 8개월 분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 적법한 해고 시 고용주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고용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금전상의 이득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최대한 6개월 분의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노동법

스위스의 노동법은 엄격하지 않으며, 기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다. 스위스의 주요노동법은 1964년에 제정된 연방노동법으로서 동법은 (1) 특정산업을 위한 단기노동규정(1975년 11월 제정), (2) 특정산업을 위한 특별규정(1975년 11월 제정), 노동자 보건 및 안전규정(1969년 3월 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장 근무여건 (1914년 6월 제정), 노동분쟁의 중재 (1949년 2월 제정), 단체임금교섭 (1956년 9월 제정)에 관한 연방법이 있으며 법정휴가보상 (1983년 12월 제정), 사회보장 (1946년 12월 제정), 노인보험에 관한 규정 (1947년 8월 제정), 의료보험 (1981 3월 제정), 사고보험 (1981년 3월 제정), 실업보험 (1982년6월 제정), 개인연금 (1982년 6월 제정) 및 직업훈련 (1987년 4월 제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단체권

외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협력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자유가 있다. 공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경제체제 변화, 부유한 노동자들의 고도로 높은 생활수준, 중요한 정치, 사회 및 경제문제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노동조합 회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들 자신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공표할 수 있음. 스위스의 노동조합연맹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및 세계노동연맹, 유럽무역노동조합연맹에 속해 있다.

2) 단체협상권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벌이고 단체협상을 벌일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합원 차별에 대해 그들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정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장려하고 있다.

아. 사회보장제도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삼주제도(Three-pillar 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다

- 一柱: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노후와 생계에 대한 연방의무보험
- 二柱: 퇴직 이후, 기존 생활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
- 三柱: 자의개인 보험

처음 두 개의 카테고리는 최종소득 60% 수준의 연금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최고 연간 57,600스위스 프랑) 개인적인 보험료에 의한 셋째 카테고리는 기타 다른 필요성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는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된다.

총 임금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액 현황

보험종류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소득
	고용주	노동자	(CHF)
노후생계보험 ¹	4.2	4.2	-
연방상해보험	0.6	0.6	-
군복무 기간 중 수입보조제도	0.25	0.25	-
실업보험	0.2	0.2	97,200
연금 ²	5-9.0	3.5-9.0	³
가족수당	1-2.5	-	-
산업재해보험 ⁴	0.1-0.7	-	97,200
기타			
남자 (최고한계지급비율)	-	1.412	97,200
여자(최고한계지급비율)	-	0.847	97,200

주1: 연간 근로 소득이 14,4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이라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각출함. / 2: 보험료의 각출은 사원의 나이에 따름 / 3: 25세부터 정년인 65(62)세 까지 연간 최소 19,200 스위스 프랑의 소득을 올리는 사원은 / 4: 최대 38,400 스위스 프랑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적립비율은 관련된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다름. 많은 사용자들이 사원의 질병에 대비하여 손실보상보험에 가입 하고 있음. 보험료는 총 임금대비 약 1.2%임.

자. 외국인 고용

1) 노동허가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스위스 시민과 외국 주민들의 인구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EU 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노동의 이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로 2005년 9월 국민투표에서 합의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주어지는 거주와 노동허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계절노동허가 (A 허가):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으로 허가되며 한시적인 거주만을 허가 하며 (최장 9 개월까지) 계절허가는 주로 건설이나 관광업 등에 이용된다.
- 일시 거주허가 (B 허가): 전체적으로 1 년간 유효하며 해마다 갱신해야 하고 . 최초 일시 거주허가 수는 매년 전 주에 걸쳐 7,000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 주에 할당 인가 수를 구체적으로 배정하며 연방정부는 4,000 명의 인가를 배정 받는다. 스위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라면 즉시 B 허가를 부여 받는다.
- 영주허가 (C 허가): 스위스에 10 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나, 협정을 맺은 국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의 국민으로서 5 년 이상 스위스에 거주한 자에게 인가한다.
- 단기 거주허가: 12 개월에 한하며 교육목적이나 단기 활동목적 예를 들면 특수계획의 수행목적에 한한다. 12 개월의 기간은 14,000 명의 할당량을 한도 내에서 18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국경 노동자 허가: 최소 6 개월 이상 인접국의 국경지대에서 거주하여온 외국인이 스위스 영토 안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그들의 거주 지역(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 예술인 허가: 연간으로 계산하여 8 개월 동안 허가한다.
- 120 일 허가: 4 개월 미만의 거주자나 노동자들에게 소위 "120 일 인가"를 적용한다. 할당제와 관계없는 이 제도는 외국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한된 부분에 한하여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허가나 거주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은 스위스 사용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스위스에서 어떤 이윤추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원이 입국하기 전에 베른(Bern)에 소재 하고 있는 연방산업 통상 노동부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정부에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적 주거인가는 노동인가가 나면 신청자의 가족들(아내와 몇 명의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거주허가가 주어지며 일시 노동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자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일시 허가 Quota 때문에 노동 허가 획득은 어렵지만, 경영자와 전문가들에 대한 허가는 쉽게 내주고 있다. 이러한 허가들은 단지 1년간 유효하고 해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은 철저하게 정부의 관할로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주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스위스에 처음 일년 거주하는 동안 Kanton(주), 직업, 기업 또는 고용주를 바꿀 수 없다. 새로 고용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노동, 거주 허가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스위스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차. 2008년 노동시장 변동 사항

1)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연방법안 마련 및 발효

불법노동 근절을 위해 스위스 정부는 2008.1.1 부로 불법노동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과 고용주에게는 벌금부과를 비롯한 최대 5년 까지 공공 조달 참여제한, 공공자금 지급 중단 또는 삭감, 스위스 연방경제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법기업 리스트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효된다.

노동허가 미소지 외국인고용 적발 시 고용주는 최대 50만 프랑의 벌금부과 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 취득 용이

유럽연합 국가 외 외국인 채용 시 노동허가 취득이 어려웠으나, 2008년부터 기업의 경영진급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 취득이 용이해 진다.

3) 19세 이상 20세 미만 노동자 야간 및 주말 노동 허가

만 19-20세 노동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야간, 주말 작업 등을 법으로 금지했으나, 만 19세 이상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이 부여된다.

8. 조세제도

가. 세제개황

스위스 조세제도는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구 등 3차원의 행정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스위스 연방세법과 26개 칸톤 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볼 때 연방정부는 스위스 내 간접세의 거의 전체를 세원으로 사용하는 반면 연방정부의 직접세 수입은 칸톤 주정부 또는 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직접세의 대부분은 칸톤 주정부 및 구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직접세 및 간접세 부담비중 (%)

구분	연방정부	칸톤 주정부	구	합계
총 세액	43.0	33.0	24.0	100.0
직접세	29.0	40.0	31.0	100.0
간접세	91.0	9.0	-	100.0

나. 연방세

- 직접세 (Direct federal tax; direkte Bundessteuer): 법인소득세는 8.5% 정률제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결혼 유무, 자년 유무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Mehrwertsteuer '01.1.1부터 시행): 7.6%
- 배당 및 이자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on interest; Verrechnungssteuer): 35%
- 인지세 (Stamp duty; Stempelabgaben): 1%
- 관 세 (Customs duty; Einfuhrzoll)
- 기타 물품소비세 및 군면제세(Military exemption tax) 등

다. 지방정부세

-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Income tax; Einkommenssteuer)
- 법인자본세 (Capital tax on corporations; Kapitalsteuer)
- 순자산세 (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Vermoegenssteuer)
- 교 구 세 (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Vermoegenssteuer)
- 부동산이득세(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Grundstueck - gewinnsteuer)
- 상속 및 증여세 (Inheritance and gift taxes;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상기 세금은 칸톤별로 상이하며 부동산재산세(Real estate property tax), 부동산양도세 (real estate transfer tax), 거래세(trade tax), 소방세(firebrigade tax) 등이 있다. 칸톤 및 구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의 2배 수준까지 달하고 있으며 칸톤의 조세 제도는 과세 대상 소득의 산정방식과 개인별 할인(allowance), 공제(deduction), 평가 (assessment) 등의 제도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Tax Harmonization Law (90.12.14 제정, 93.1.1부터 시행)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칸톤별로 또는 동일 칸톤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라. 법인세

1) 조세법에 따른 기업 구분

스위스 조세법은 기업을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분리된다.

- 생산기업 : 생산, 무역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주회사 : 타 회사에 지분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다국적기업: 영업활동의 대부분의 해외에서 일어나고, 스위스에서는 관리, 금융 등 만 전담하는 기업

2) 기업유형 별 법인세

□ 생산/무역 및 서비스기업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은 주정부 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 및 최저 세율은 확정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법인세를 수익에 비례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대상 수익의 8.5%이다.

법인세 예시

구분	수익세	재산세
연방 직접세	8.5%	
지방정부세 (최대 세율)	24.5%	0.525%
합계	33.0% = CHF 99,000	0.525%=2,625 CHF
세전기업이익	401,625 CHF	
수익/재산세	101,625 CHF	
순수기업이익 (세 후)	300,000 CHF	
세전기업이익의 법인세 비율	25.29%	

주: 과세대상 수익 CHF 300.000

자본금: CHF 500,000

□ 지주회사

자산의 2/3가 투자되거나 회사 수익의 2/3가 여타 회사 지분 참여에 의해 발생하면 지주회사로 인정되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세금감면을 받는다.

연방 및 주정부는 한 회사가 2백만 스위스 프랑 또는 자본금의 20%이상을 여타 회사에 투자한 경우 배당이익금에 투자금액을 공제 할 수 있는 세제상 이득을 보며, 연방정부는 지주회사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 다국적기업의 관리기업

주정부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정부는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보통 법인세율의 1/10~1/15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사항: EU-스위스 법인세법 개혁 협상 개시

EU 집행위원회는 스위스 주(칸톤)정부가 스위스 내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1972년 스위스와 EU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 조세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공정 법인세제를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협약을 스위스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EU와 스위스는 2007.11.12 베른(스위스) 및 브뤼셀에서 EU의 세금 분쟁 관련 첫 공식 협상을 개시 했다.

마.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주정부는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를 부과시킨다. 내국인은 1년에 1회 자진 소득신고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분기별 원천징수하여 조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은 세전 총 수입에서 사회보장세, 의료보험료 등 세금공제 혜택을 제외한 종합 소득 과세 표준에 지방정부마다 기혼여부 및 소득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2005년 개인소득세 예시

세전소득(스위스 프랑)	주정부별 소득세율(%)	주정부평균(%)
50,000	2.67~7.31	5.50
100,000	6.74~15.33	12.42
200,000	13.79~24.16	21.39

자료원: 스위스 연방세무국

바. 부가가치세

□ 일반현황

스위스는 유럽에게 가장 낮은 부가가치세인 7.6%, 생필품, 잡지 및 신문 에는 2.4%, 요식업 및 호텔업에는 3.6%를 적용시키고 있다.

연간 매출 75,000 스위스 프랑 이상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부가세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사업장은 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참고사항: 부가가치세 단일화 추진

현 스위스 부가가치세율은 7.6% (생활필수용품 2.6%, 숙박업 3.6%)이나 정부와 스위스 경제인 연합은 부가가치세율을 6%로 단일화 추진 중이나, 숙박 및 소매업연합에서는 이원화된 부가 가치세 유지를 주장하며 숙박 및 식료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그 외 용역 및 상품에 대해서는 6%의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스위스 프랑화(CHF)은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통화로 명성이 높은 편이다.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인해 달러나 유로화가 불안정할 때도 스위스 프랑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1980년 이후 미 달러화 대비 스위스프랑의 환율은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는 외환의 구입, 매각, 송금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외환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금의 매입, 매각도 완전히 자유롭다. 다만, 대외경제 지향적인 스위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금리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 통화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관리범위를 사전 공지한다. 특히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프랑화의 가치를 위협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나. 자금조달

스위스는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설비 등의 투자계획에 대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은행을 통한 중장기 담보대출,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대출, 벤처 캐피탈 등이 있다.

1) 투자계획 실현을 위한 중.단기 은행대출

공장설립 등 초기투자 자금대출 신청 시 은행은 투자계획서 및 타당성과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검토 후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공장설립 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건설 및 설비비용을 포함한 공장 가치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비스업 또는 사무실은 업무의 위험도 및 사업목적을 고려해야 하지만 통상 투자금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하며 기업의 신용도 및 성장가능성이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 대출

회사운영을 위한 단기신용 대출방법은 담보를 통한 대출과 백지신용대출이 있다. 대출 금액은 기업의 신용도 및 성장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금융방법으로는 파이낸스 리징과 포페이팅이 있으며, 신생 벤처기업은 은행이 외 금융권 대출, 보증, 전환사채발행, 유사 벤처캐피탈 유치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투자기업은 여타 통화보다 스위스 내에서 스위스 프랑화로 자금조달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

3) 벤처캐피탈

스위스 벤처캐피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벤처캐피탈의 구성을 보면 개인투자자가 55%, 보험회사 16%, 연금 10% 및 기관투자자 7%를 차지하고 있어, 여타 국가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높다.

스위스연방정부는 연방법을 근거로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된 벤처캐피탈은 설립 및 증자 시 채권구입면제를 받으며, 연방직접세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 개인 투자자가 엔젤투자자로 신생기업 설립 시 자금을 지원하면 연방직접세에 대한 감면 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 관련 상세는 다음 기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 SECA Swiss Private Equity&Corporate Finance(www.seca.ch)
- ASBAN Association of swiss Business Angels Networks(www.asban.ch)

4) 중소기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 보증조합(Buergschaftgenossenschaft)를 통한 지급 보증

대출금의 최대 50만 프랑까지 보증조합을 통한 보증이 가능하며 연방정부는 이중 최대 65%까지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 호텔대출

연방정부는 호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호텔 건설 및 운영에 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으며, 시행기관으로는 SGH(Swiss society for Hotel Credit)가 있다. SGH는 자금 조달 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정부 경제촉진기관, 은행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투자금액을 마련한다.

□ 산간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이자 지원

대출금액 50만 프랑에 대해 연방정부는 90%까지 보증을 서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보증 및 이자 지원을 보증조합(Buergschaftsgenossenschaft)에 신청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연방정부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범주에 드는 중소기업대출을 최고 대출금 50만 프랑에 대한 이자의 40%를 최고 6년간 지원한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인구규모는 750만 명으로 시장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을 상회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스위스는 1인당 구매력이 가장 높은 고밀도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급제품, 고가제품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규모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의 경우 스위스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등한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스위스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의 소비자로 구성되어있어 스위스 시장진출에 성공한 제품은 유럽 지역 대부분의 시장에 걸쳐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스위스 업체들은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언어사용 능력으로 일찍부터 인근 지역국가와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견업체들은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에 판매처를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스위스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한다면 서유럽 진출에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나. 시장특성

스위스는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각 언어권별로 다소 상이한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어 스위스 시장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적합한 시장이다.

또한 스위스시장은 고가 고품질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 및 최고 품질 제품에 대해서는 개척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시 유럽시장 공략의 사전단계로 소비자들의 반응 조사를 위해 일단 스위스시장에 제품을 선보인 후 각 언어 문화권별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스위스 시장은 협소하며 안정적인 시장 특성상 수요신장이 빠른 편이 아닌 관계로 대량 구매가 가능한 분야는 중간 도매상을 배제하여 중간 이윤을 소멸시키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소비업자나 대량 소매업 조직(소비자협동조합, 백화점 등)과 수입 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고 있고, 생산재의 경우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있다.

소매업이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Self-Service, Discount store, Supermarket 등의 대형 소매점이 확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 대형 소매점과의 거래가 향후 한국 상품의 대 스위스 시장진출 확대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제품공급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유통업체들이 생산자로부터의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대형유통업체인 Coop과 Migros등은 홍콩과 대만에 구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본사 내에도 구매파트를 증설하여 직접수입을 늘려가고 있다.

한국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MP3, LCD TV, 휴대폰, 셋톱박스, DVD플레이어 등 전자제품과 아이디어 광고용품에 대해서만은 고품질 신개발제품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브랜드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다. 실례로 MP3, PMP, LCD TV, 마사지기 등에 대해서는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마사지기에 대해서는 지역별 전문 대리점도 다수 운영 중이다.

아시아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대형식료품유통점 및 슈퍼마켓에서 간장, 면류, 향신료 등을 아시아식품 코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 물가정보

□ 도시 : 취리히(스위스)			- 환율 : US 1 불 = SFr1.23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1,219.51	7.1	구두(1켤레, 소가족)	325.2
1.2	넥타이(1개, 실크100%)	79.67	7.2	치약(150g, 1개)	3.98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121.95	7.3	칫솔(1개)	3.98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7.89	7.4	면도기(1세트)	12.93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626.02	7.5	건전지(1세트, 1.5V AA)	3.66
1.6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32.52	7.6	화장지(1통, 300매)	2.85
1.7	청바지(Levi's)	121.95	7.7	비누(1개)	1.63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58.54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4.07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4.63	8.2	볼펜(12개)	9.76
2.3	닭고기(1KG, 생닭)	8.94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4.88
2.4	쌀(1KG, Short Grain)	3.2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3.78
2.5	밀가루(1KG)	1.38	8.5	휴대폰(범용형)	283.74
2.6	설탕(1KG, 백설탕)	1.22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20.33
2.7	계란(10개)	4.07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79.67
2.8	감자(1KG, 현지산)	1.8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39.84
2.9	미네랄워터(1.5L, Evian 1Pet)	0.93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4,390.24
3.1	고추장(1Kg)	12.2	9.2	엔진오일(1L)	8.13
3.2	된장(1Kg)	6.1	9.3	휘발유(1L)	1.33
3.3	라면(1개)	1.3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46.34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31.71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382.11
3.5	불고기(1인분, 200g)	30.89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24.39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31.71	10.2	시내버스(1구간)	3.09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4.88
4.1	햄버거(1개)	5.61	10.4	택시(추가요금/Km)	2.85
4.2	피자(1판)	29.19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22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203.25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63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0.33
4.5	담배(수입산, 1갑)	4.88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2
4.6	위스키(1병, 750ml)	36.59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28
4.7	커피(1병, 175g)	11.95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0.61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page)	0.69
5.1	[임차] 중급아파트(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3,252.03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14
5.2	[임차] 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4,065.04	11.8	특급우편(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116.18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2%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6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7
6.1	TV(29인치, 칼라, 범용)	813.01			
6.2	VTR(6헤드, 범용)	284.55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롬보)	203.25			
6.4	전자레인지	203.2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975.61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528.46			

□ 도시 : 취리히(스위스)			- 환율 : US 1 불 = SFr1.23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40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439.02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406.5	18.2	상여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1%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21,138.21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3,008.13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4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4,634.15	18.6	연간국경일	9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97.65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 일 수	-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중신 양도가가능)	34,959.35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5시간이하
13.3	골프공(1타)	48.78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09.76	19.1	법정최저자금	81,300.81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4.39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532.03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2.2	19.3	외국인업체세제혜택(법인세)	-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
14.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8,130.08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1.5~15.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97.56			
14.4	치과(스켈링, 1회)	121.95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5.89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25.2			
15.2	한국신문(1개월)	-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4.39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5.61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88.62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15.45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8.54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1.95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8.29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2.2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5,284.55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4,471.54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시회 참가/참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는 스위스전시협회(Association of Fairs, ASF)www.messen-schweiz.ch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관심 전시회는 주최기관을 접촉하여 전시회 공식 디렉 토리를 송부 받아 볼 수 있다.

2) 제품별 해당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스위스 기계. 전기. 전자. 금속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 (The Swis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SWISSMEM, www.swissmem.ch)
- 스위스 화학 산업협회
 - (Swiss Society of Chemical Industries; SSCI or SGCI, www.sgci.ch)
- 스위스 시계산업협회
 - (Federation of the Swiss Watch Industry; FH, www.fhs.ch)
- 스위스 섬유산업연합회
 - (Swiss Textile Federation; TVS, www.swisstextiles.ch)
- 스위스 물류산업협회
 - (Swiss Association of Logistic; SGL or ASL, www.sgl.ch)
- 스위스 플라스틱협회
 - (Swiss Plastics Association; KVS, www.kvs.ch)
- 스위스 환경산업협회
 - (The Swiss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SVUT, www.umwelttechnik-verband.ch)
- 스위스 수입. 도매업자 협회
 - (Federation of Swiss Importers and Wholesale-Traders; VSIG, www.vsig.ch)
- 취리히 테크노파크
 - (Technopark Zurich, www.technopark.ch)
- 스위스 건축 관련업체
 - (Schweizer Bau Dokumentation, www.baudoc.ch)

3) 전문잡지를 활용

전문잡지 정보는 각 전시회 주최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가 대부분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전문매거진에 관련 업체 정보, 신상품소개, 현재 스위스시장의 트렌드 등이 소개 되고 있다.

- Consumer Electronics Medias(www.ce-markt.ch) : IT 관련 업체 정보
- Boutique(www.etzel-verlag.ch/boutique) : 신상품 소개
- Auto Illustrierte(www.auto-illustrierte.ch) : 자동차 정보
- OnlinePC(www.onlinepc.ch) : 컴퓨터, 인터넷
- Swiss Snowsports(www.snowsports.ch) : 겨울철 스포츠
- HandelsZeitung(www.handelszeitung.ch) : 스위스 경제 주간지
- Swiss Shop(www.detaillisten.ch) : 스위스 도/소매업 정보
- IT Reseller(www.itreseller.ch) : IT 제품과 시장 동향
- Computerworld(www.computerworld.ch) : 컴퓨터 관련 제품과 시장 동향
- TREND(www.trendmagazin.ch) : Musik, Mode, Lifestyle, Game 등에 대한 트렌드 소개
- Petri Heil(www.petri-heil.ch) : 낚시 관련 정보
- Schweizer Skisport(www.sportart.ch) : 스키 관련 정보
- Sport insider(www.iguana.ch) : 스포츠 트렌드 정보
- Golf & Country(www.golfandcountry.ch) : 골프 관련 정보
- Coop(www.coopzeitung.ch) : 유통업체인 Coop 사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
- Migros(www.migrosmagazin.ch) : 유통업체인 Migros 사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전시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스위스 전시협회(Association of Fairs, ASF) www.messenschweiz.ch 를 통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를 열람가능하며, 각 전시회 주최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지난번 전시회에 참가했던 업체의 리스트를 제품/ 지역/위치 별로 분류한 DB 자료가 있다.

DB 자료에는 통상적으로 업체 홈페이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바이어 정보를 습득 가능하며, 인근 지역인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대형 전시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스위스업체 정보를 습득 가능하다.

2) 각종 검색 홈페이지를 통한 바이어 발굴

- Kompass(www.kompass.ch):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유료)
- Wer Liefert Was?(www.wlw.ch):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
- Businesslink(www.businesslink.ch): 비즈니스 검색 사이트
- Gate24(www.gate24.ch):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
- Swissfirms(www.swissfirms.ch): 기업 검색 사이트
- Findis(www.findis.ch): 기업 검색 사이트
- Profil(www.profil.ch): 기업 검색 사이트

3) KOTRA, 스위스취리히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ch)에 게시된 인콰이어리를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에 기술된 제품별 해당 협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협회에 가입된 업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각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 세미나 및 소규모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업체 정보 획득 가능하다.

4) 기타

국내진출 스위스 업체 협회 홈페이지에 현재 한국과 활발히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의 정보 검색 가능하며 홈페이지 URL 은 WISS-KOREAN BUSINESS COUNCIL: www.skbcckorea.org 이다. 또한, 스위스 소비시장 연구소(IHA-GfK, www.ihagfk.ch)에서는 매년 스위스 대형 유통업체 정보 책자를 발간 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유료 주문 가능(독어로만 발간)하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복장

전반적으로 복장상태는 깨끗한 편이다. 고위 관리직, 회사 및 금융권에 종사자는 정장 차림을 고수하면서 유명브랜드의 값비싼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당연히 깔끔한 정장차림이 유리하다.

스위스인이 상대방의 신뢰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이 신발의 상태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잘 닦은 좋은 구두를 신도록 하며 절대로 운동화를 신어선 안 된다. 깨끗한 손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위스인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사업에서도 똑 같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인사

스위스에서는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남녀 모두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한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최대한 격식을 차려 Mr. Mrs. Ms 등을 이름 앞에 붙여 성을 부르고 상대방이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교수, 의사인 경우 성 앞에 호식을 반드시 붙여 불러야 한다.

3) 선물

스위스에서 업무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스위스의 많은 기업들은 자사 직원들이 선물 받은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은 절대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뇌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너를 저녁식사에 초대하는 것이다. 계약을 성사시킨 후 특별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한국산 수공예 제품 정도면 충분하다. 선물은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하며, 만약에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포장을 풀어보고 후에 감사의 글이나 전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 집으로 저녁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와인 한 병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선물이다. 훌륭한 수제 초콜릿도 항상 환영 받는다.

4) 약속잡기, 시간 및 준비성

약속은 적어도 3주전에 서면으로 약속을 정해야 하며, 약속 4~5일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위스에서는 약속시간 지키기는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스케줄과 미팅 일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고, 약속시간 몇 분전에는 도착해 있어야 하며, 지각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처음 만날 때 자신의 회사에 대한 관련 정보와 만난 목적, 계획 등에 대해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가 미흡한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첫인상이 오래간다는 것을 명심한다.

5) 식사

비즈니스 런치에서 ‘Dutsch pay’는 피해야 한다. 대화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번갈아 가면서 식사비를 지급하고 만약에 다음 식사에 대접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나,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들에 의해 언제 어디서나 고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답게 모든 시스템들이 법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규제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인 규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문화적인 금기사항으로 잘 융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차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대화에서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주제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스위스가 독일과 협력한 역사적인 사실과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후 수용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계좌를 후손들에게 찾아주지 않아 1990년 후반 휴먼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했던 스위스 은행 스캔들에 관한 것이다. 현재 스위스인은 이러한 자신의 역사를 받아 드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외국인의 비즈니스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다. 상담/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국내업체는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있지만 1% 부족으로 아쉽게도 고객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소들 중에는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스위스 현지 업체 방문상담 중 “한국 업체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이어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

1) 바이어의 마인드로 뛰어들자.

바이어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품만 판다는 생각보다는, 바이어도 또 다른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입장을 바꿔 상대방의 마케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마케팅 배려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스위스 바이어들이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두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는, “스위스 시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에 많은 양을 주문할 수 없고 소량으로 자주 주문해야 하는데 괜찮겠는가?”와 다른 하나는 “고객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테스트기간이 다른 나라 보다 오래 걸린다”였다

(실례로 스위스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국내업체는 샘플을 보낸 후 3개월 후에 스위스 바이어로부터 소량의 주문을 받았는데, 스위스업체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미팅에 임하면 바이어가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오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리게 되며 필요한 사항과 상대방의 마케팅 애로점에 대해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끈끈한 사업파트너로 발전하게 된다.

2) 스위스 고객 눈높이에 맞는 소개서를 제작하자.

실제로 방문한 업체의 담당자 대부분은 한국업체의 제품소개서가 산만하고 고객의 주목을 끌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으며, 스위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스위스식 3단계 제품소개서(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같을 것으로 예상됨) 제작이 필요하다고 했다.

□ 1단계 (의사타진용)

1단계 제품소개서는 접어서 편지봉투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복사용지(A3) 1매 정도가 적당하며 전체 제품을 종류별로 묶어 사진을 나열하고 특징을 설명하다. 일단 한눈에 들어와야 하며 간단 명료해야 하고, 고객에게 최초 접근 시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품사진을 중심으로 꾸민다. (회사 이력은 물론이고, 생산업체일 경우는 반드시 생산자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실례로 바이어들은 국내업체의 홈페이지를 봐서는 생산자와 도매상을 잘 구별하지 못했으며, 또한 홈페이지가 대부분 화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

□ 2단계 (관심고객 확보용)

2단계 제품소개서는 제품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관심고객용으로 주로 한국업체들이 사용하는 카탈로그와 형태가 일치하는데, 제품 종류별로 사진을 위주로 나열을 하고 간단한 설명과 제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관심고객에게 일일이 방문을 하며 샘플을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제품사진이 매우 중요하다.

□ 3단계 (테크닉노트, 샘플)

1·2단계를 통해 고객과 구체적으로 원하는 제품이 선택되면 3단계에 서는 기술적인 부분의 소개서와 샘플이 필요하다, 마케팅 담당자가 모든 종류의 기술적인 부분을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제품별로 복사용지 한 장 분량의 테크닉 노트가 필요한데, 가능한 한 간단히 표기하며 그 분야 선도기업 제품과의 비교표가 있으면 바이어를 설득시키기에 매우 효율적이다.

3단계로 분류하여 소개서를 제작함으로써 최초 경제적인 부담은 있으나, 2·3단계의 소개서는 이미 국내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며 1단계(의사타진용)만 추가적으로 제작하면 됨. 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2단계(잠재고객 확보용) 소개서를 1단계(의사타진용) 소개서로 대체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초 접근 시 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2단계 제품소개서의 대용으로 제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1단계 제품소개서를 의사타진용으로 새롭게 제작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3) 회사 이미지에 신경을 쓰자.

한국업체는 중국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스위스 고객에게는 이미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의 규모, 매출액, 종업원, 에이전트 현황, 수상경력, 전시회참가 경력 등을 설명함으로써 업체와 제품 품질에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신제품일 경우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는지, 이에 따른 우리 제품의 매출비중과 유럽시장에 최초 진출할 경우 선도업체로서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제품의 경우는 다른 저가제품과의 비교설명, 신상품 출시 계획, 유럽 쪽 전시회 참가 의지 등을 이해시키면 반응이 좋을 수 있다. 스위스 바이어들은 복장, 용모, 명함을 건네주는 방법에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비즈니스에서는 보수적인 면이 많으며 구두를 통한 의견교환이나 약속 후에는 가능하면 메일로 정리를 해서 확인을 받은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정직하고 정확하며 철저한 국민성으로 신뢰성은 지극히 높으나, 인간적인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규범적이며 법규 및 계약에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계약체결, 상담 체결 시에는 미진한 부분은 철저하게 서류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스위스인들은 성격이 매우 냉정하고 차가운 편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일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스위스 기업인들은 상담을 위해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료를 매우 꼼꼼히 체크하는 편이다. 따라서 자료상의 오타 또는 실수(업체명이 앞뒤 페이지에서 다르게 나오는 등)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담 후에 실제 계약까지는 우리업체들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고 손해를 최소화 하려는 비즈니스 스타일 때문이다. 상대방이 연락을 할 때 까지는 인내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실제로 상담 후 약 3~4개월 후에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동안 어느 바이어는 우리업체로부터 약 10통의 재촉 메일을 받았다 한다. 상담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독일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며 불어권 지역에서는 불어 또는 영어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인이 독어사용권에서 불어를 사용하거나, 불어 사용권에서 독어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스위스에는 많은 대행업체(Agent)가 있으며 한 상품 또는 특정상품군의 전문취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경험이 없거나 현지 디스트리뷰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커미션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이 스위스시장의 협소함과 광고비용 지불 조건 때문에 독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에이전트기간, 해약시점, 지역별 안배, 광고비용 등 관련사항을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한다.(현지시장 사정에 밝은 해당 무역관과의 사전 상의가 바람직하다)

특히 주로 홍콩과 대만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위스의 대형 유통업체 구매본부를 통하여 대 스위스 진출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아시아에 구매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유럽 업체의 특성상 스위스 본사는 구매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아시아지역 구매 매니저 접촉이 수출의 관건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스위스 시장특성을 살린 시장진출 성공사례

1) 스위스를 유럽의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한 사례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독어, 불어, 이태리어) 및 문화권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9천 이상으로서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D사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DivX Player를 스위스 수입업자에게 2006년부터 연간 20만불 상당을 수출하고 있으며, 동 수입업체는 사장반응을 점검한 후 자사의 유통 거점을 활용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지로 판매 시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스위스 시장을 테스트시장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2) 스위스 첨단기술 보유기업과의 협력 사례

스위스는 각종 산업용기계 및 정밀기계, IT(특히 보안, NanoTech 분야), 정밀 화학 및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가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기술 보유 국가이면서 자체시장이 협소하여 해외시장 진출 및 외국 업체와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다.

한국의 H사는 세계 디지털 위성수신기기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로서 동사는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수출하는 제품의 대부분에 스위스 소재 첨단 IT 기술 업체인 K사로부터 핵심 가능부품인 Digital access control chip을 공급받아 판매에 성공 하는 등 기술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에 성공하였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구하기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소유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주택임차가 보편적인데 침실 3개, 응접실 1개, 부엌 등 4인 가족용 아파트의 월 임차료는 통상 2,500에서 3,300 스위스 프랑 수준에 달하고 있다.

현지에서의 주택임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임차방식은 보편화 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대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자가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하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임차 희망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스 이사 시즌은 4월과 10월로 간혹 임차 계약서 계약 해지 가능한 기간을 4월 또는 10월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한다.

□ 주택관련보험

임차인 과실로 임차 주택 및 비품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보험 (화재, 기타 각종 파손등)과 이웃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며, 계약종료 시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소요에 대비하는 방안도 되고, 기타 자신의 재산(가구, 귀금속등)에 대하여도 보험 가입 가능하다.

나. 체류허가 신청절차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후 거주지 소재 Gemeindehaus에 신청하면 됨. 체류허가 신청 시에는 비자발급 통지서, 여권,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하며, 체류허가증은 신청 후 2주 정도 면 발급 된다.

다. 은행구좌 개설

UBS, Credit Suisse 등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면 되며 외국인이라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구좌개설이 가능하다. 단 원칙적으로 구좌개설은 외국인 체류허가증 (Auslaender-ausweis)을 득한 후 가능하다.

라. 전화신청

'98년 10월부터 민영화된 SWISSCOM에 신청하면 됨. 전화 신청 시에는 500 스위스 프랑을 예치해야 하며, 전화가설에는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Express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통화가 가능하다. 단, Express 신청 시에는 추가 가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마. 자동차 구입

스위스는 자동차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스위스 도로에는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차종이 운행되고 있으며 신차 구입을 희망할 경우 차량 메이커별로 딜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중고차 시장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중고차 구입도 용이한 편이다. 자동차 가격은 전량 수입품이기 때문에 신차 및 중고차 모두 약간 비싼 편이다.

바. 운전면허증 교환

국내 운전면허증 보유자는 운전면허증은 스위스 주재 한국 영사관에 번역공증 요청하여, 면허증원본, 번역공증 및 체류허가(신분증)을 관할 지역 교통청에 제출하며 스위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가능하다. 스위스내에서는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입국 후 1년 동안 유효함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필요없으며, 입국 후 1년 후 반드시 면허증 교환을 해야 한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특성

연평균 섭씨 9도이며, 춘하추동 4계절이 있으나 계절별 기온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날씨이다. 예전에는 가장 더운 7월 중 평균온도가 섭씨 18도, 가장 추운 1월 중 평균 기온은 0도에 불과하여 여름철에도 에어컨의 도움 없이 생활하였으나, 최근에는 지구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의 현상으로 여름에는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아 2003년의 경우 여름에는 에어컨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5년도 여름의 경우 30도를 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습하지 않아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알프스 산악지역은 겨울철 높은 적설량을 보이며, 산악지형인 관계로 편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기후가 자주 바뀐다.

2) 출장 시 추천복장

시내지역은 한겨울에도 그다지 춥지 않고 한여름에도 기온이 우려할 정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나 산악지역은 한여름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있어 산악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에 대비한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융프라우 등 유명 산악지를 방문할 경우, 노약자 및 유아를 대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함)

주요 도시 월별 기온분포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네바	-2.6 3.7	-1.5 5.9	0.1 9.8	3.0 13.9	6.9 18.4	10.0 22.2	11.9 25.3	11.3 24.4	8.6 20.8	5.2 14.9	1.1 8.4	-1.5 4.5
인터라켄	4.3 2.3	-3.0 4.5	0.6 8.7	2.6 12.8	6.6 17.4	9.7 20.5	11.7 22.9	11.2 21.9	8.6 18.9	4.5 13.8	-0.2 7.3	-3.0 3.1
로잔	0.7 3.5	0.3 5.2	2.5 8.7	5.4 13.0	9.3 17.3	12.4 21.1	14.7 24.2	14.2 23.1	11.7 19.5	8.1 14.1	3.3 7.9	0.3 4.3
루체른	-2.6 2.8	-1.4 4.8	0.7 9.2	3.9 13.3	7.9 17.9	11.0 20.9	13.1 23.5	12.6 22.6	10.0 19.3	6.1 13.7	1.5 7.5	-1.4 3.8
루가노	0.1 6.0	1.5 4.0	-2.6 11.6	7.3 14.9	10.9 18.8	14.1 23.0	16.8 25.8	16.1 24.8	13.3 21.3	9.2 16.5	4.3 10.8	1.5 7.1
체르마트	-8.0 5.0	-7.0 7.0	-7.0 10.0	-2.0 13.0	2.0 14.0	6.0 17.0	9.0 23.0	7.0 19.0	6.0 16.0	0.0 9.0	-3.0 6.0	-7.0 2.0
취리히	-2.6 2.1	-1.7 4.3	0.8 8.4	3.9 12.6	7.9 17.4	11.0 20.6	13.0 23.0	12.9 22.1	10.2 18.9	6.4 13.4	1.6 7.0	-1.7 3.1

자료원 : 스위스관광청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8시간으로서 한국이 17:00이면 스위스는 09:00가 된다. 단 하계기간(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에는 서머타임 실시로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으로 짧아진다. 즉, 한국이 16:00이면 스위스는 09:00시가 된다.

2)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평일은 08:00 ~ 17:00 근무가 보편화 되어있으며, 일부 기업은 7:00시 혹은 7:30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토요일에는 일반 상점을 제외하고 사무실은 휴무하며, 일반 상점의 토요일 개점시간은 08:00시부터 16:30시까지 이다. 일요일에는 모든 상점 및 사무실이 휴무한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많은 기차역 근처의 상점은 일요일에도 개점을 하며, 공항, 역 대합실 등 일부는 밤늦은 시간에도 개점하는 상점이 있다.

다. 주요 단위

스위스도 유럽 여타 국가와 동일한 미터법(m)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게 단위도 킬로그램(kg)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인이 현지에서 도량형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우리나라와 스위스간에는 1979년 6월에 체결된 일반사증면제 협정에 의해 3개월(90일) 미만 체류 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각 주정부 및 외사 담당 경찰서 등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득해야만 체류가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신청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입국대상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소정의 비자 신청서, 체류목적명세서, 근무처확인서, 체재비용 부담에 관한 증빙서(고용계약서), 세금납부증명서, 무범죄경력 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비자 획득 기간은 본국 조회절차를 거치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2) 비자발급처

- 발급처 : 주한 스위스대사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10
- 전 화 : 02-739-9511/4
- 팩 스 : 02-737-9392
- 홈페이지 : http://www.eda.admin.ch/seoul_emb/e/home.html
- 이메일 : swissemb@seo.rep.admin.ch
- 휴 일 : 토, 일요일, 양국국경일
- 주 의 : 평일에도 비자발급 영사업무는 오전 중에 주로 이루어지며, 사전예약을 요구 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에 대사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방문하는 것이 필요함

3) 출입국 절차

여권 및 비자확인만 할 뿐 통관절차는 지극히 간소하며 세관신고는 자기신고를 위주로 하고 있다. 공항 통관대에는 붉은등과 푸른등이 켜있는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붉은등 쪽은 세관 신고가 필요한 입국자의 통관대이며 특별히 세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푸른등 통관대를 이용하면 된다. 대형 종이박스를 반입할 경우 세관의 검색이 자주 있는 편이다.

4) 면세품 보유한도

- 담 배 200 개비
- 알코올 15% 초과 주류: 1 리터(알코올 15% 까지: 2 리터)
- 선물용품 300 스위스프랑 이내

5) 출입국 유의사항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나, 푸른등 통관대에서도 가끔 입국자 별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입국자는 붉은등 통관대를 이용해야 한다. 입국 시 특별한 예방접종 확인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천연두 감염지역에서 오는 경우에는 국제 천연두 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다. 출국 시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기념품으로 구입하는 경우, 기내 휴대반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부치는 짐에 넣어두어야 한다.

6) 공항 - 시내 이동

취리히 공항(Zurich Airport)에서 시내로의 이동 방법은 기차의 경우 공항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기차, 버스는 5프랑, 택시는 45프랑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제네바 공항(Geneva Airport)에서 시내로의 이동 방법은 기차의 경우 공항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기차, 버스는 5프랑, 택시는 30 프랑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바젤(Basel Airport)의 경우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버스 5프랑, 택시 30프랑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마. 환율/환전

1)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스위스프랑으로서 약칭은 CHF이며, 1스위스 프랑은 100 Rappen(라펜)이다. 주화에는 5, 10, 20 Rappen, 1/2, 1, 2, 5 CHF 등이 있으며, 지폐에는 10, 20, 50, 100, 200, 1000 CHF이 있다. 스위스는 EU 가입국이 아니나, 유로화는 슈퍼 및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로화로 지불할 경우 거스름 돈은 스위스 프랑으로 받게 되고 환율도 좋지 않으니,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소액은 스위스 프랑화로 바꾸어 놓는 것이 좋다.

2)환율

미 달러화 대비 스위스프랑화 환율은 98년 10월 8일의 경우 84년 이래 최고 강세를 보여 1달러당 1.27 스위스프랑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안정적인 환율 추세가 지속되면서 2001년 6월 29일의 경우 미화 1달러당 환율은 1.79스위스 프랑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전 전후 세계정세의 불안으로 스위스 프랑화가 대 달러 강세를 지속하면서 2004년 평균환율은 US\$1=CHF1.24를 기록하였고 2006년도 평균환율은 US\$1=CHF 1.25을 기록했다.

3) 환전

공항 및 기차역, 시내 중심가 등 주요 지역에 은행이 있어 손쉽게 환전이 가능하며, 호텔에서 환전이 가능하나 통상 6-10% 정도 불리한 환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은행을 통해 환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은행을 통해서 환전할 때에는 환전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4)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기는 하나 상점에 따라서 취급하는 카드에 차이가 있는 편으로 가장 많은 사용되는 카드는 마스터, 비자, 다이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다
신용카드 분실 등 긴급 연락번호는 아래와 같다.

- 비자카드 : 0800 89 47 32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 0800 25 52 00
- 다이너스 클럽 : 01 835 45 45
- 마스터 카드 : 0800 89 70 92

바. 교통/통신

1) 공항 및 항구

스위스에는 취리히(Kloten)와 제네바(Cointrin), 바젤(Mulhouse)에 3개 국제공항이 있으며 내륙국으로서 국제항구는 없으며, 바젤이 유일한 내수로 항구이다.

2) 스위스-한국 운항정보

- 직항편
 - 대한 항공에서 인천-취리히 구간을 하계(4-10 월) 3 회(화, 목, 토), 동계(11-3 월) 2 회(화, 토) 운항 : www.koreanair.co.kr
- 유럽 항공 경유편
 - Air France(매일) : www.airfrance.co.kr
 - Alitalia(수, 금, 일) : www.alitaliakorea.com
 - Emirates Airline(화, 목, 금, 토, 일) : www.emirates.com/korea/kr
 - KLM(매일) : www.klm.co.kr
 - Lufthansa(매일) : www.lufthansa-korea.com
- 아시아 항공 경유편
 - Japan Airline(월, 화, 수, 금, 토, 일) : www.jal.co.kr
 - Singapore Airline(월, 화, 금, 토, 일) : www.singaporeair.com/kr
 - Thai Airways INT's(매일) : www.thaiair.co.kr
- 스위스 내 항공권 가격 비교 및 구매 정보 : www.ebookers.ch

3) 시내 대중교통

시내교통 수단으로서는 버스, 전차, 내수교통용 보트 및 우체국에서 운행하는 버스 등이 있다. 버스 및 전차는 자동티켓 판매대에서 승차 전에 티켓을 구입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30분용(5정거장내 유효, 2.40 CHF), 1시간용(3.80 CHF), 24시간용(7.60 CHF) 티켓이 있으며, 동일한 티켓으로 버스와 전차, 보트 등 대중교통 수단을 공히 사용할 수 있다.유의사항은 승.하차 시 검표를 하지 않고 승객의 자율의사에 맡기나, 수시로 검표요원에 의한 불시 점검이 있으며 적발 시 80 CHF의 벌과금 및 기타 업무비용이 부과된다.

4) 택시

택시의 경우 회사별, 택시종류(공항, 일반)별, 도시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 요금이 5-7 스위스 프랑이며, Km당 3-4 프랑이 추가됨. 승객수와 소지물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기시간 1시간에 대해 50 스위스 프랑이 요구됨.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 되어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5) 철도

철도교통에 있어 스위스는 거의 전철화 되어있는 총 5천킬로미터의 철도노선과 1,800개의 역을 구비하여 유럽 내에서도 가장 잘 정비된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주요 산악 철도를 포함, 약 2천킬로미터의 사설철도는 약 100개에 달하는 사설철도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 국민의 철도이용은 1인당 연간 1,600킬로미터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스위스의 철도교통은 시간이 정확하고 안락함이 주된 특징이다. 대부분 기차는 1등칸 및 2등칸으로 나뉘며 기차 종류별(정차 빈도 별)로 지방철도(local train; Regionalzug), 급행(fast trains; Schnellzug), 도시간 철도(Intercity; IC), 유로 철도(Eurocity; EC)로 구분된다. (기차표는 굳이 1등칸을 구입할 필요 없음)

시속 300Km의 TGV 프랑스고속철도가 매일 베른, 제네바, 로잔, 노이샤텔에서 파리로 운행하고 있으며, 제네바-파리간을 3시간반에 연결하고 있음. Intercity차편은 스위스 주요 도시간 운행하는 급행 열차편이며 Eurocity차편은 유럽 200개 주요도시와 스위스 도시를 잇는 국제 열차편이다.

최근 스위스는 철도망 근대화 및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로 90년부터 취리히에서 운영하고 있는 S-Bahn suburban train서비스를 꼽을 수 있는데, 동 열차 편에는 13억 CHF을 투자하였으며 1일 약 20 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의 철도청(SBB)은 서비스가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철도여행객을 위해 유럽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패키지형 철도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고객유치에 적극적임. 스위스 철도청의 홈페이지(www.sbb.ch, 영문지원)를 접속하면 열차편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다.

6) 국내통신

전화요금은 한국보다 상당히 비싸 60라펜이 기본이며, 사용 시간대에 따라 차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요율 적용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경우 06:00 ~ 13:00시간 대이며 평일의 그 외 시간대 및 토요일과 일요일은 할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전화 사용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공중 전화기는 동전 투입식과 카드식 2종류가 있으나, 카드식 종류의 공중전화기가 일반적 이라는 점에서 SWISSCOM에서 발행하는 전화카드(5, 10, 20프랑 등)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편이 효율적임. 특이한 사항은 국내전화를 걸 경우에도 지역번호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 점으로, 취리히(지역번호 01)에 사는 사람이 취리히 내 지역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도 반드시 '044'를 먼저 입력해야 한다. 스위스 내 대부분 공중전화는 국제전화 가능함. 전화번호 안내는 국내전화 111, 국제전화 안내 191이다. 단, 독일 및 오스트리아 지역안내는 192로 문의해야 하며, 프랑스지역은 193으로 문의해야 한다

7) 국제통신

통신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어 국제통화에도 별 문제가 없다. 한국과 스위스간 국제전화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스위스에서 서울로:
 - 00 (국제전화호출), 82 (한국), 지역번호(최초의 0 은 불필요), 수화자 번호
 - Ex) 서울 987-6543 전화할 경우: 00-82-2-987-6543
- 한국에서 스위스로:
 - 001 또는 002(국제전화호출), 41(스위스), 지역번호(최초의 0 은 불필요)순
 - Ex) 취리히 01/ 456-7890 전화할 경우: 001 (또는 002)-41-1-456-7890
- Collect Call (수신자 부담 요금)
 - DACOM: 0800-56-3671 (접속 전화번호)
 - 접속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 KT: 080-055-7667 (접속 전화번호)
 - 접속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 선불카드
 - DACOM: 0800-563671 (접속 전화번호)
 - 접속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카드번호 및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 KT: 080-055-7667 (접속 전화번호)
 - 접속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2 번을 누르면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8) 우편제도

스위스의 우편, 체신제도는 여타 유럽선진국과 같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국영인 스위스 체신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의 일반우편은 A-Post와 B-Post 2종으로 구분되며, 국내의 경우 A-Post는 발송 하루만에 B-Post는 2~3일만에 배달된다. Post인 경우 스위스-유럽간 우편 소요일수는 약 2-5일, 여타 지역으로 발송 시에는 약 4-10일정도 소요된다. 더욱 빨리 우편물을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Express mail을 이용하면 된다.

소포의 경우 air mail, 보통(선편, surface mail)또는 두가지의 복합방식인 surface air lifted(SAL) packet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소포 air mail은 일반우편물의 air mail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며, SAL방식은 유럽 이외 지역으로 송부되는 소포를 항공편으로 우송한 후 도착지에서는 보통의 육상운송 배달방식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원격지 국가에도 10-25일 정도만 걸린다.

사. 호텔/식당

1)호텔

스위스의 호텔은 www.tophotels.ch를 통하여, 자신의 수요 및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호텔들에 대한 정보의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며, 취리히 지역은 취리히 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http://www.zuerich.com>)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전화로 예약이 매우 간편하여 이를 적극 추천한다.

호텔요금은 매우 비싼 편으로서 5 Star Hotel 싱글룸의 경우 US\$260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3 Star Hotel의 경우 무역관 할인요금을 적용해도 싱글룸 기준 US\$100 이상이다. 통상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는 것이, 스위스 현지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며 가격은 시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격 수준은 아래와 같다(취리히무역관 홈페이지 좌측 배너 “호텔-통역 예약정보”에 여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예약 할 수 있는 호텔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

구분	가격(\$)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88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15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8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1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8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2

취리히지역

5 Star 호텔	
Baur au Lac	044-220-5020 Talstr. 1, 8022 Zurich www.bauraulac.ch
Dolder Grand	044-251-6231 Kurhausstr. 65, 8032 Zurich www.hoteldolder.ch
Hilton Int'l	044-810-3131 Hohenbuhlstr. 10, 8058 Zurich-Glattbrugg www.hilton.com
Marriott	044-363-6363 Neumuhlequai 42, 8001 Zurich www.marriott.com/property/propertypage.mi?marshaCode=ZRHDT
4 Star 호텔	
Ambassador	044-261-7600 Falkenst. 6, 8008 Zurich www.ambassadorhotel.ch
Dolder Waldhaus	044-251-9360 Kunsthhausstr. 20, 8030 Zurich www.dolderwaldhaus.ch
Intercontinental	044-404-4444 Badenerstrasse 420, 8040 Zurich www.ichotelsgroup.com/h/d/ic/1/en/home
3 Star 호텔	
Leoneck	044-254-2222 Leonhardtstr.1 8001 Zurich www.leoneck.ch

제네바지역

5 Star 호텔	
Hotel Intercontinental	022-919-3939 Ch.Petit-Saconnex 7-9,1211 Geneva
Hotel des Bergues	022-731-5050 q. Bergues 33, 1211 Gene
De la Paix	022) 732 6150 11 quai du Mont-Blanc
4 Star 호텔	
Hotel Ambassador	022) 731 7200 q. Bergues 21-pl Chevelu 1-3, 1211 Geneva
Movenpick	022-798-7575 r. de Pre-Bois 29

로잔지역

5 Star 호텔	
Beau Rivage Palace	021-613-3333 1006 Ouchy-Lausanne
Lausanne Palace	021-331-3131 Grand Chene 7-9
4 Star 호텔	
Chateau d'Ouchy	021-616-7451 pl. du Port 2
Mirabeau	021-320-6231 av. du la Gare 31

베른지역

5 Star 호텔	
Bellevue Palace	031-320-4545 Kochergasse 3
Schweizerhof	031-311-4501 Bahnhofplatz 11
4 Star 호텔	
Ambassador	031-370-9999 Seftigenstr. 97 - 99
Bern	031-312-1021 Zeughausgasse 9

바젤지역

5 Star 호텔	
Basel Hilton	061-271-6622 Aeschengraben 31
Swissotel Basel Le Plaza	061-692-3333 Am Messeplatz 25Bahnhofplatz 11
4 Star 호텔	
Basel	061-264-6800 Munzgasse 12
Drachen	061-272-9090 Aeschenvorstadt 24

2) 한식

한식의 경우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40 프랑 정도가 소요되며 저녁 뷔페의 경우 50-60 프랑 정도의 비용이 요구된다.

- 고려정 (Korea Pavillion)
 - Badenerstrasse 457, Zurich
 - Tel: 044) 492-3332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6 번(또는 7 번, 13 번)을 타고 Paradeplatz 하차 후, 2 번으로 갈아탄 다음, Letzigraben 역 하차(총 30 분 소요)
- 대나무집(Bambushain)
 - Vogelsangstr. 33, 8006, Zurich
 - Tel: 044) 363-2228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10 번 탑승 후, Winkelriedstrasse 에서 하차(총 20 분 소요)
- 유미하나(Yumihana) : 한국식품점 및 Take-out 점
 - Schuetzengasse7, 8001 Zurich
 - Tel: 044) 750-5161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Bahnhofstrasse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후 첫 번째 골목 좌회전(총 도보 3 분)

3) 중식

중식의 경우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40 프랑 정도가 소요된다.

- China Garden
 - Schuetzengasse 12, 8001 Zurich
 - Tel: 044) 211-7100, Fax: 044) 211-3561
 - Homepage: www.china-garden.ch
 - Email: Vivian.cham@china-garden.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도보로 5 분
- Suan Long (시내위치)
 - Selanuerstrasse 32, 8001 Zurich
 - Tel: 044) 242-1168
 - Fax 및 Homepage: 없음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6 번(또는 7 번, 13 번)을 타고 Paradeplatz 하차 후, 8 번으로 갈아탄 다음, Selnau 역 하차(총 13 분 소요)

4) 일식

일식의 경우 스위스 내에서도 비싼 음식에 속해 면류를 제외하고는 통상 40-50프랑 정도가 소요된다.

- Restaurant Takano
 - Uetlibergstr.166, 8045 Zurich
 - Tel: 044) 463-2228, Fax: 044) 461-7554
 - Homepage: www.takano.ch, Email : eat@takano.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13 번 탑승 후, Waffenplatz 역에서 하차(총 20 분 소요)
- Fujiya of Japan
 - Tessinerplatz 5, 8002 Zurich
 - Tel: 044) 208-1555, Fax: 044) 208-1420
 - Homepage: www.fujiya.ch, Email : info@ascot.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6 번(또는, 7 번, 13 번)을 타고 Bahnhof Enge 역에서 하차 (총 15 분 소요)

5) 스위스 전통음식

- Zeughauskeller
 - Bahnhofstrasse 28a, Zurich
 - Tel: 044) 211-2690, Fax: N/A
 - Homepage: www.zeughauskeller.ch, Email : zeughauskeller@bluewin.ch
 - 주메뉴: 소시지, 스테이크, 구운 감자, 전통 맥주
 - 전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제로, 한국어로 된 식단표도 구비하고 있음.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6 번(또는 7 번, 13 번)을 타고 Paradeplatz 하차
- Restaurant Swiss Chuchi
 - Hotel Alder, Rosengasse 10, 8001 Zurich
 - Tel: 044) 266-9696, Fax: 044) 266-9669
 - Homepage: www.restaurant-swiss-chuchi.ch
 - Email: info@hotel-alder.ch
 - 주메뉴: 풍뒤, 라클렛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4 번을 타고 Rathaus 하차한 뒤, 도보로 4 분

6) 현지 고유음식

풍뒤와 라클렛은 스위스 전통음식의 대표격이다. 풍뒤는 가마솥처럼 생긴 용기에 치즈를 녹여서 거기에 빵을 담가먹는 요리로 주로 겨울철에 즐기는데, 치즈 종류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다. 라클렛은 군감자에 녹인 치즈를 얹어 먹는데, 이 역시 다양한 종류의 라클렛용 치즈가 있다.

아. 관공서 관행

업무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나, 양질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민 업무를 처리한다.

뇌물은 통용되지 않는 대신, 관공서에 서비스 요청 시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 크리스마스 이후 1월초 까지는 업무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처리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서 12월초 이전까지 끝내는 것이 좋다.

자. 공휴일

1) 휴일 지정방식

스위스는 연방정부에서 지정된 공휴일과 각 주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나뉘어진다. 연방정부 공휴일은 모든 주 정부에 걸쳐 공휴일로 인정되며, 주정부 공휴일은 해당 주 정부에서만 공휴일이 인정된다. 아래 공휴일은 취리히 주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나머지 25개 주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공휴일이 1년에 1-2일정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2008년 스위스 공휴일(취리히 주의 경우)

- 신년 (Neujahr): 1. 1 - 2
- 부활절 연휴 (Ostern): 3.21- 24
- Sechselaeuten(젝세로이텐): 4. 24(16 시까지 근무)
- 노동절 (Tag der Arbeit): 5.1
- 예수 승천일 (Auffahrt): 5. 9
- 강림절 월요일 (Pfingsten): 5.12
- 스위스연방 설립 기념일 (Nationalfeiertag): 8. 1
- Knabenschiessen(크나벤쉬센): 9. 15 (오전만 근무)
- 크리스마스 연휴(Weihnachten): 12. 24 - 26
 - Sechselaeuten(젝세로이텐): 칸톤 취리히에서만 개최되는 봄축제
 - Knabenschiessen(크나벤쉬센): 칸톤 취리히에서만 개최되는 청소년 사격대회
 - 각 주(Kanton)별 종교와 지방문화에 따라 휴일이 더 있을 수 있음

□ 유럽 국가별 휴일 관련 사이트

- Feiertagskalender(www.feiertagskalender.ch)
- 유럽국가별로 휴일 정보 수록(휴일유래, 근무시간, 학교방학기간)
- 스위스의 경우 칸톤별(주정부)로 각기 다른 휴일 정보도 수록

2) 출장 지양기간

부활절 전후로 상당수 기업들이 1주일 휴무에 들어가 이 기간 중 출장 시에는 상담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여름 하계기간에는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 비즈니스 비수기이며, 12월 중순부터 1월초 까지는 성탄절 연휴로 역시 비즈니스 상담이 어렵다. 또한 각 주 정부 별로 공휴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출장 전 공휴일 여부를 확인 후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 의복

한국의 날씨와 비슷해 특별한 의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이에 대비해야 하며, 산악지역은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기온이

낮다는 점(여름에도 0도를 유지)을 감안하여 스위스 방문 중 산악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방한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전기

220V전압과 최대 10amp, 50Hz(AC)이며, 플러그는 2-pin, 3-pin 또는 earth socket 방식의 2-pin을 사용하고 있으며, pin의 크기는 한국보다 좁은 4mm직경의 원형이다. 노트북 컴퓨터 등 한국산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규격과 현지규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댑터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2) 여행여건

□ 치안

정치, 사회, 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치안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최근 동구권 등 외국 난민의 유입 증가로 도난사건 등 범죄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2002년 이후 공항, 호텔로비 앞, 카페 등에서 가방 또는 소지품을 분실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로 집 보험에 가입한 경우, 도난시에는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후에 분실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택시

회사별, 택시종류 (공항, 일반) 별, 도시 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요금이 5-7 CHF이며 Km당 3-4 CHF이 추가된다.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된 택시승강장을 이용하여 택시를 탈 수 있으며,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응급

스위스는 병원시설, 의료진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긴급처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여행 중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44를 호출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취리히 시내 24시간 개점하는 약국은 Theaterstrasse 14에 소재한 Apotheke(Tel: 044-252-5600)와 취리히역내의 약국이 있다.

□ 팁관행

식당 등에서 팁은 서비스가 좋을 때 10% 이하를 주며 특히 카드지불의 경우 슬립을 가져오면 끝자리를 적당히 맞춰 예를 들어 CHF 61.30일 때 끝을 CHF 65로 맞춰 적어 주면 된다.

□ 식수

자연보호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어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석회질이 과다 함유되어 있어 방문자가 현지의 수돗물을 마실 경우 배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쇼핑

□ 물가

일반소비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인근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현지 소비자들조차 주말을 이용하여 국경의 독일(Konstanz역 근처 쇼핑 타운), 오스트리아(St. Gallen 근처의 국경지대), 프랑스 소매점을 이용할 정도로 현지 물가 수준은 높다. 식료품 가격대는 그리 높지 않으나 고급 소비용품의 경우는 현저하게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 쇼핑장소

취리히의 경우 유럽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는 Bahnhofstrasse를 중심으로 주요 백화점 (Jelmoli, Globud, Manor)을 포함하여 명품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다. 취리히 시내 이외에도 주요 지역별로 쇼핑몰이 형성되어 있으며, 여행객의 경우 한번쯤은 쇼핑거리를 구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 특산품

스위스 초콜릿이 유명하여, 쇼핑물에는 거의 예외없이 초콜릿 대리점이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민속공예품을 판매하는 전문점도 많은데, 스위스의 전형적인 민속공예품을 보고 싶다면 주요 지역에 체인점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HEIMAT-WERK (www.heimatwerk.ch)"에서 거의 모든 스위스 전통공예품을 구경할 수 있다. 스위스 민속공예품 중 대표적인 제품은 종과 목각 인형을 들 수 있다.

자료원: 취리히무역관 자체취합(2007년 12월)

카. 유용한 연락처

□ 비상연락처

스위스는 병원시설, 의료진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긴급처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여행 중 비상구호가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44를 호출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번호부에는 의사 등 의료진들의 전화번호가 별도로 명기되어있어 의료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비는 고액임) 참고로, 취리히 시내 24시간 개점하는 약국은 Theater strasse 14에 소재한 Apotheke이다. (Tel: 044-252-5600)

□ 한국기관

- 주한 스위스 대사관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Add: Kalcheggweg 38, CH-3006 Berne, Switzerland
 - Tel: 031-356 2444, Fax : 031-356 2450
 - Homepage: http://www.mofat.go.kr/ek/ek_a003/ek_chch/ek_01.jsp
 - Email: swiss@mofat.go.kr

- 제네바 상주 대표부
 -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Add: 1 Avenue de l'Ariana, Case Postale 42, 1211 Geneva, Switzerland
 - Tel: 022-748 0000, Fax : 022-748 0001
 - Homepage: http://www.mofat.go.kr/ek/ek_a003/ek_gvgv/ek_02.jsp
 - Email: mission.korea-rep@ties.itu.int

(자료원: 취리히 무역관(2007년 2월))

타. 관광명소

알프스를 배경으로 만년설과 호수, 깨끗하고 정결한 도시 및 시골정경, 잘 정비된 교통 및 시설과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 등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는 문화유적 등을 보유한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양지로 평가 받고 있다.

주요 관광지는 취리히(Zurich), 루체른(Luzern), 융프라우(Jungfrau), 제네바(Geneva), 체르마트(Zermatt), 생모리쯔(St.Moritz), 생갈렌(St.Gallen), 루가노(Lugano), 노이샤텔(Neuchatel) 등 스위스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다.

대부분의 관광지에는 여행자를 위한 관광안내사무소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 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스위스를 방문 전 방문 예정 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위스 관광청에서는 한글 홈페이지(www.myswitzerland.co.kr)를 운영 중이다.

- 주요 관광지역
 - 취리히지역: 취리히 시가지(Bahnhofstrasse), 취리히호수, 빈터투어(Winterthur)
 - 동북부지역: 생갈렌, 아펜젤
 - 서북부지역: 바젤, 솔로톤, 바덴
 - 베른지역: 베른 시가지, 빌, 에멘탈
 - 베른오버란트: 인터라켄, 툰, 브리엔즈, 알프스산정상(융프라우, 아이거, 뮌히)
 - 중부지역: 루체른 시가지, 루체른호수, 필라투스산, 리기산, 티트리스산 등
 - 그리손즈지역: 쿠어, 엔가딘(생모리츠), 크랑몽타나
 - 티치노지역: 로카르노, 루가노
 - 바라이즈지역: 시온, 마테호른, 체르마트산, 크랑몽타나
 - 제네바지역: 로잔, Vaud Ri verd, 제네바 시가지, 레만호수
 - 노이샤텔: 프리브르크, 노이샤텔

(자료원 : 스위스 관광청(www.myswitzerland.co.kr))